

국·내·입·법·의·견·조·사

제 12 호

과학기술혁신과 법제개선

1993. 11.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2 · 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오준근

수석연구원 정상조

선임연구원 최성근

연구원 배승희

목 차

제1편 과학기술혁신과 법제개선

| | |
|--|----|
| I. 문제의 소재 | 5 |
| II. 각계의 의견 | 8 |
|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 8 |
| 2. 각계의견의 정리 및 평가 | 29 |
| III. 과학기술관련법제의 현황, 정부입법계획 및 입법추진현황 ... | 31 |
| 1. 과학기술관련법제의 현황 | 31 |
| 2. 정부의 입법계획 | 35 |
| 3. 입법추진현황 | 44 |
| IV. 입법방향 | 50 |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 | |
|--------------------|-----|
|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57 |
| 1. 최근입법의견 목록 | 58 |
| 2. 최근입법의견 요지 | 62 |
| II. 최신법령 목록 | 112 |

제 1 편

과학기술혁신과 법제개선

I. 문제의 소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우려하는 의견이 각계에서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 의견들은, 우리경제가 지난 30여년간 급속도의 성장을 이룩하여왔고, 우리 상품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수출될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을 저임금과 선진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음에서 찾고 있다. 이 의견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경제현실은, 첫째 우리가 더 이상 저임금을 무기로 국제경쟁력에 임할 수 없고, 둘째 특허장벽의 강화 및 지적소유권제도의 실시등으로 선진외국의 첨단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중국과 동남아의 상품에까지 추월당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오직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상품의 제조·판매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들고 있다. 이 방안은 정부와 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기술장벽이 높아지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 자체의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선진외국과 첨단기술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야만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식하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확대와 개발된 기술의 철저한 법적 보호를 통한 연구개발의 유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다각적으로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1993년 7월 대한민국정부가 발간한 “신경제5개년계획(93-97) 경제시책중점 과제보고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환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냉전체제의 붕괴등 국제질서의 급격한 재편으로 새로운 경제적·기술적 환경이 조성
- 세계는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념전쟁」에서 과학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제전쟁」시대로 진입
- 선진국들은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블럭결성의 가속화와 공정무역(UR), 지구환경보호(GR), 첨단무기확산방지등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통해 기술 보호의 장벽을 높여가는 추세

이러한 배경하에서 수립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의 목표로 “21세기초 기술선진국 비약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함”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97년까지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시장에서 주력상품이 될 특정분야의 전략핵심 기술을 세계일류수준화하여 조기에 상품화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배양과 기술비약을 위한 기초연구의 자립기반확충
- 교통·환경·보건의료기술 등 당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 기술을 조기에 향상시켜 국민의 편익을 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신경제건설의 핵심적 뒷받침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전략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하고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활동을 최대한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시장수요지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해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강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정부가 국민앞에 제시한 “신경제5개년계획(93-97) 경제시책중점과제보고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신경제」건설의 핵심적 뒷받침이 되는 부분중의 하나임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이라는 목표는 “과학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경제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각종 의견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고 있음은 이 때문이다. 과학기술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각종 의견이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경우, 과학기술의 혁신이 현행 제도의 보다 혁신적인 운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경우와 현행 제도의 근본적 변혁이 요구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일정한 제도의 근본적 변혁은 관련법제의 개선을 통하여서만 정착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혁신적 운용도 관련법제의 개선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¹⁾.

과학기술이라는 분야는 과학기술에 관한 정부기관 및 위원회의 구성,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수립 부터 과학기술투자에 이르는 정부역할, 과학기술산물 및 과학기술산물을 개발한 자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쳐있다. 과학기술관련 의견도 이러한 전 분야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무수히 제기되고 있으나, 그중 직접적 입법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속에서 간접적으로 법제개선을 위한 의견을 간헐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법제개선을 통하여 정착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법제개선에 앞서 적절한 입법의견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 민주법치국가에서 입법은 국민적 의견을 적절히 수렴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1) 개혁과제중의 하나인 “과학기술혁신을 이룩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재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연구”를 협동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제개선을 위한 바른 방향제시는 법정책·법현실·법체계·법이론의 각 측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합치에 따라 이 협동연구사업이 계획되었다. 양 기관은 관계전문가의 많은 의견제시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2) 이 입법의견조사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한국법제연구원」간의 협동연구사업의 제1단계 조사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견은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최종보고서인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연구”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전문가의 많은 지적을 기대한다.

Ⅱ. 각계의 의견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과학기술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은 매우 넓다.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법제도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영향력행사와 관련된 공법적 법제 영역으로부터 과학기술산물을 개발한 자 및 그 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경제법 내지는 사법의 법제영역에 이르기 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입법의견도 이러한 과학기술관련법제의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과학기술혁신전반에 관한 법개정을 위한 입법의견을 먼저 조사하고, 과학기술관련행정제도등 국가의 직접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후, 각종 경제법 내지는 사법적 사항중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입법의견을 조사하는 순서로 각종 입법의견을 정리하여 보았다.

1)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의 제정

○ 김채겸의원 등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우수과학두뇌의 공급확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에서 시장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려는 것임. (김채겸의원외 30인,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안, 1992. 11. 6)

○ 최영락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자체 기술개발능력의 축적을 통하여 왕성한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길 뿐이나 현재 우리에게는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기존기술의 고도화 능력이 부족하다. 또 사회·경제적 제도가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일

어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세지원 및 관세특혜등의 세제·금융지원등으로 뒷받침되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환경, 기술혁신을 위한 인력의 수급관련제도, 과학기술정보, 협동연구, 외국기술의 도입, 연구소의 설립등과 관련된 기술개발환경,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산업화등에 있어 각종 애로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애로요인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이 뒷받침하여야 할 정책방향은 첫째 기술혁신을 국가 경쟁력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간주하여 총체적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둘째 투자규모의 대폭적 확대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정책의 수행, 세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네째 정부구매, 관세, 특허, 시험·검사등 각종 사회제도가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혁신 지향적 시스템으로 개편, 다섯째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망의 구축, 연구개발활동의 네트워크화 촉진, 전업적 연구개발조직의 육성, 연구개발실용화사업을 담당할 기관의 설립·경비의 지원등 연구기반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등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993. 1. 발췌)

2)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

○ 최병선(서울대 교수)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를 대폭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새정부가 천명한 “작은정부”의 실현과 명실상부한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은 장기전략적 산업발전기반 확충과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 및 산업정책의 지나친 정치화 방지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이같은 기본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부문은 우선 산업기술개발에 있어 상공부의 주도적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처 체신부등의 산업기술관련기능과 교육부와 노동부의 산업인력육성기능은 상공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또 환경처의 환경기술개발산업육성과 재무부의

외국인직접투자업무도 상공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병선, 산업연구원정책협의회, 90년대 산업정책방향과 정부의 역할, 1993.1.18. 한국경제신문, 1993.1.18.)

○ 하두봉(서울대 교수)

국제경제구조가 기술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과학기술을 육성,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정책바탕을 과학기술발전에 두는 한편 과학기술행정조직의 혁신적 개편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처가 기획조정뿐 아니라 집행기능도 갖도록 하여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감독·책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과학기술특별보좌관제도를 신설, 6공의 북방정책과 같이 신정부의 국가운영기본정책을 과학기술발전전략 중심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두봉,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세미나, 신한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 한국경제신문 1993.2.10)

○ 정정길(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이 필요

-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는 ①과학기술정책 총괄주관 부처의 위상문제 ②총체적인 과학기술예산 개념의 부재.(각 부처 예산의 일부) ③조정과 통합의 곤란.(각 부처간, 정책수단간) ④각 부처간의 연계 부족 ⑤산-학 연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향으로는

첫째 인력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R&D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할 「연구개발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연구개발부」는 ①국무총리소속기관이 아닌 부처 장관급으로 위상 강화 ②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친 기획과 예산권 등을 통하여 조정과 통합 ③기술인력정책의 총괄 ④과학기술예산의 편성과 배분 : 지역별, 과제별 배분 ⑤각 부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은 각 부처가 담당 ⑥과학기술자원의 종합동원 및 배분 ⑦국제과학기술협력업무의 총괄 및 종합수행 등의 구조와 기능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제2수석비서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제제2수석비서관」은 가급적 산업을 잘 아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 「정보화 및 산업기술위원회」의 간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인력-산업-통상 등을 유기적

으로 연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세계 「정보화 및 산업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①중장기적인 정보화 및 산업기술관련정책들을 심의-조정 ②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평가 ③정보화 및 산업기술관련예산의 대항목을 편성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정길,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3. 3., 9면 이하)

3)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 권영완 등(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각종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조정등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성·운영되는 것이므로 이들 위원회의 운영은 당초 설치목적과 취지에 따라 일관성있게 운영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법령에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각 관계법률의 근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다만 기술진흥확대회의와 기술진흥심의회 등의 등 단순한 대통령지시로 운영되어온 위원회는 법령의 근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규정의 내용은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각기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그 기본체계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는 각 위원회간의 역할분담이나 관계설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문제를 다루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 기초과학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간에 연관관계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들 양자는 다 같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같은 수준의 위원회라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설정을 더욱 어렵게한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개발위원회,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독자적인 법령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문 또는 분야별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며 또한 그 구성도 동일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능을 갖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관계부처 위주로 되어있다는 점이 문제다. 과학기술관계특성을 고려하여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계의 참여에 의한 합의도출과정도 위원회 구성운영의 중요한 기본취지의 하나라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도 관계부처 이외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문제도 각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각종 위원회를 과학기술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위원회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 하위개념의 위원회로 정비·체계화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잠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 1993.5. 124면)

4) 연구기관 설립·운영

(1)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 배순훈(대우전자사장)

출연연구소가 침체되어있다. 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과거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에만 매달려 잘못된 면을 들추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야할 때다. 산업체연구소와 보완관계를 갖는 출연연구소가 나와야 한다. 현재 전공분야별로 있는 출연연구소를 산업기술·기초기술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산업기술연구소는 업체로부터의 용역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기초기술담당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적극지원을 받아 마음껏 기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경영경제학회 월례토론회, 한국경제신문, 1993.4.12.)

○ 오정무(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장)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출연연구소 구성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원등 전문분야별로 나뉘

어져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체제를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비롯 기초 및 공공기술연구, 산업기술연구, 과학교육등의 기관으로 이루어진 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경영경제학회 월례토론회, 한국경제신문, 1993.4.12.)

○ 강박광(한국과학연구소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연구관리에 도입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요지향적인 연구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연구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는 국립연구기관과 가까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① 기업과 연구계약을 많이 맺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그만큼 정부지원이 줄어들도록 예산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산학협동을 많이 할수록 다음 해 연구소 운영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생겼고, ②정부가 예산지원을 빌미로 인사권, 예산권, 연구관리권에 깊숙이 개입해 연구생산성을 저하시켰으며, ③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제도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연구원의 노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④연구기관에 협상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 노사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73년 제정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대폭 개정하여 ①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의 명시, ②기업가의 계약연구사업수입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 보장, ③연구원 연금제도의 도입, ④연구수입을 자체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손익보증기금제도의 허용, ⑤노조문제의 제도적 해결 등이 법조항에 포함되어야 함. (강박광 한국과학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주최 『과학기술정책간담회』, 1993.4.16)

○ 권영완 등(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법령은

- 민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근간으로 하는 경우와
- 별도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두가지 유형이 있으나, 현재 육성지원에 관한 실질적 차이점은 발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령의 기초는 육성지원제도의 운영에 따라서 오히려 출연연구기관

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 가칭 “특정연구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설립운영과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를 보면 대개의 경우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그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잠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 1993.5, 168면 이하)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권영완 등(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이 국내·외 과학기술환경 변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각종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제도개선등 여건조성이 중요하며 기관의 정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국공립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활동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각 단위기관에서 이를 분담하고 있어 유사한 성격의 연구기관을 통합정비하여 적정 단위기관형성을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활동영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많은 유사기능의 연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기능의 통합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순한 시험검사업무 위주의 기관은 이를 과감히 통합·정비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06개의 국공립 연구기관을 업무성격별로 보면 연구활동 위주의 기관은 17개기관(16%)에 불과하고 기타 기관은 연구와 시험의 병행 또는 시험검사위주의 기관으로서 복합기능을 보유한 기관도 내용상으로는 대부분 시험검사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기관 및 기능정비와 함께 최신 첨단기술 및 기법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연구 수행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또는 연구개발능력이 다른 연구개발주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위치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타 분야에서 개발된 새로운 첨단기술 또는 기법들을 국공립연구기관이 도입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연구기반의 확충이 연구활성화의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잠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 1993.5, 216면 이하)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

○ 권영완 등(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기본법령은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일련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 부설연구소의 설립기준의 선정 또는 신고사항등이 모두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협약대상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기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산업계의 연구개발주체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보기에 는 제도의 출발점에서 부터 기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91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과제가 8개 과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산업계의 기술개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연구개발주체로서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잠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 1993.5, 242면 이하)

5) 중장기 국가과학기술계획

○ 권영완 등(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가 과학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문계획 또는 부처별 계획등 하위 계획들이 종합적인 하나의 국가계획틀 속에서 상호 위

상관계가 설정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급속히 다원화 되면서 각종 법령으로 제도화된 과학기술개발 계획들이 국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틀 안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부처 고유의 정책영역으로 과학기술 문제를 끌어들이며 접근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각 법령의 규정 내용이 종합계획과의 연계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각 독자적인 과학기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이 각 부처간의 벽을 더욱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한 예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3조의 경우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과의 관계설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문계획의 성격의 기본계획들이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토록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기간을 명문화 하지 않고 있어 계획의 시점과 계획기간의 차이로 종합계획과 부문계획 또는 부문계획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설정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경우 그 운영과정에서라도 통일적인 지침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잠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 1993.5, 78면 이하)

6) 특정연구개발사업

○ 권영완 등(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계법령체계는 기술개발촉진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관계규정이 미비하여

- 연구성과의 귀속문제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등

기본적인 사항도 과학기술처 훈령인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일관성있게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잠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 1993.5, 165면)

7)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 확대

(1) 정부보조금지급확대

○ 박용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활용되어 왔고,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겠지만, 보조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서 상당한 정도의 수출 또는 수입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다자협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에 있어서 기본 연구총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용연구의 경우에는 총비용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비율의 상한선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각종 보조금에 관한 국내입법에 있어서도 그러한 국제적 경향을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용태,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질서의 형성 움직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1992. 12)

(2) 과학기술투자증대를 위한 재원확보 및 조달방안

○ 송종국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의 증대가 필요함이 인정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조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부문의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체도의 개선 및 기존의 예산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으로써 목적세인 과학기술세와 채권의 발행을 들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은 후자의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예산체계 내에서 과학기술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로 선진각국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 예산제도의 도입이다. 둘째로 국방 예산에서 국방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증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일정비율을 과학기술투자에 배분하도록 명시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의 목표나 투자수요의 일부만을 보전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목적세인 과학기술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목적세 도입의 이론적인 타당성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나, 목적세 설치에 따른 조세저항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세로 확보한 재원의 지출용도도 공공성이 강한 연구개발비와 과학기술기반의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세의 세원도 부가세인 교육세와의 중복을 피하고 세수의 확보가 충분한 기존의 조세나 신설될 조세에 부가시켜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세원으로는 기존의 특별소비세를 현실성 있게 재편하여 그 전체의 세수입을 과학기술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과학기술투자 재원의 확보방안은 국공채의 발행을 들 수 있다. 기초적·기반적인 연구개발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공채의 발행은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탄력적이고 집중적인 확보방안이 될 수 있다. 채권의 발행으로 연구개발재원을 확보할 경우의 장점은 신속적인 재원조달의 가능성은 물론 기술개발의 수혜자와 부담자를 일치시키고, 연구개발의 결과 경제 및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위해서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 연구, 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92.4. 186면)

(3) 과학기술투자확대를 위한 법개정방안

○ 한국경제신문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 기술선진국달성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중 연구개발투자증가율을 일정율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증액을 제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6년 까지 1조원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차질없는 조성과 함께 국방예산에서 연구개발투자부문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등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일부를 관련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과학기술진흥법에 명시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에 기술개발투자의 하한선을 법정화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의 강화 및 공공구매제도의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3.2.17.)

8)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촉진

(1) 협동연구개발촉진을 위한 법령 근거의 필요성

○ 홍유수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산·학·연 간의 협동연구시 문제점은 산·학간에는 연구과제선정문제, 산·연간에는 각연구주체의 능력파악문제, 각종정보의 누출문제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상호간 신뢰회복과 협동연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협동연구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연구교류촉진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나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에 추가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지원체계, 세제지원, 연구성과의 귀속문제, 비용배분문제, 외국과의 연구교류문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등의 관련법도 적극적 활용면에서 부적합하며, 절차의 복잡성을 감안, 명문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의 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주체를 종합적으로 연계, 협동연구를 조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칭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센터'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술정보 제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기존의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데이터통신, 기업기술지원센터등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정보 온라인 유통망의 확대와 기관간 상호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국가광역기술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족기술을 기업이 인식하도록 하여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기업차원이 아닌 업종별 공통애로기술의 개발, 공통소요부품, 소재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보조금지원, 국가연구소시설 이용, 기술인력지원등 특별지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근거가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지원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연구의 연계방안, 과학기술연구 정책·평가센터, 1990.5. 82면)

(2) 협동연구축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대

○ 홍유수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산·학간 협동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관련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동기부여에 실패하고 있다. 세제혜택은 기업의 대연구소출연, 시설지원, 인력지원, 연구기자재 제공에 대하여 다양하게 주어져야 하며, 한 예로써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기업이 제공할 경우는 가속상각의 폭을 넓혀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완료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원에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학간 협동연구 전담 기술인력을 기업이 별도로 확보할 경우의 소요비용 전액, 보상금,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이 학·연관련 연구종사자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지원경비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세제절차상 복잡성으로 이용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원세제에 협동연구를 대상으로 명문화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준비금, 기술 및 인력개발비 조세공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특별상각)제도를 통합·보강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동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종합한도액에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80년 이후 과학기술 투자가 정부부문은 연평균 12.3% 민간부문은 51.

2%씩 증가하여 정부부문 비중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연에 대한 정부부문의 지원이 확대되어야만 산과 학·연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자금 및 기술개발 특별회계단위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 국가적 중요기술의 개발 또는 기업화는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연구의 연계방안, 과학기술연구 정책·평가센터, 1990.5. 82면)

(3) 협동연구촉진을 위한 연구인력확보 및 인적교류확대

○ 홍유수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협동연구촉진을 위하여는 자연계대학원 정원확대, 연구위주의 대학원 운영체제확립, 연구전담교수제 실시, 기업장학금 출연 확대, 연구인력의 재교육 및 전환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정부출연연구소내의 기업체연구소 설치, 산·학간 연구자 상호파견연구 및 해외공동연수 지원방안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일본의 “연구교류촉진법”을 다듬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입법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연구의 연계방안, 과학기술연구 정책·평가센터, 1990.5. 82면)

(4) 협동연구시설의 확대

○ 홍유수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시설면에서는 산·학·연 협동연구의 경우 국가가 부족시설을 보완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 이용이 어려우므로 일본의 “기반기술원활화법” 규정같이 정부시설의 실비활용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협동연구에서 학·연의 연구의 추가적 시설확대 부족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의 기초과학 연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산·학·연의 연구시설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연구의 연계방안, 과학기술연구 정책·평가센터, 1990.5. 82면)

9) 외국과학기술의 도입

○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이 1962~90년의 1천7백46건 기술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의 74%가 5년~20년전의 낡은 기술로 밝혀졌고 55%는 이미 들어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외화를 낭비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기업들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자체개발하기보다는 대부분 보다 손쉬운 해외기술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술도입 후 3년가량 지난 후 이를 개량·발전시키는 단계에 도달하며 조사대상업체의 73% 정도가 기대했던대로 도입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은 미·일등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기술종속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체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이외에도 과학기술육성법·외자도입법·외환관리법등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기술도입관련 법규의 통합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1991.9.24.)

10) 산업기술의 정책적 지원

○ 이경태(산업연구원)

90년대의 산업정책은 산업활력의 회복과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직접적 선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간접적 기능적 지원과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할려면 정부 역할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정부역할의 기본방향은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고양하고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효율적 시장제도를 구축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우선 정치논리의 경제지배를 배제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산업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정부규제를 대폭완화하는것도 시급하다. 정부주도형 개발시대에 감시와 통제목적으로 형성된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여신관리규제 및 만성적 적자시대의 외환규제 등은 과감히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시장은 정부가 불개입, 방임한다고 해서 자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동태적인 산업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쟁의 규범과 시장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역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금융지원과 금융자율화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와 노사관계의 안정기반 구축이다. 셋째 산업기술의 혁신이다. 넷째 대기업집단의 전문화유도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자립기반구축이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3대과제는 인력 자금등의 요소투입을 총량적으로 확대하고 그 배분을 산업경쟁력강화와 연계시켜 조정하며 기업간 협력 산·학협력 및 연구기관의 운영자율화등 연구개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경태, 산업연구원정책협의회, 90년대 산업정책방향과 정부의 역할, 1993.1.18. 한국경제신문, 1993.1.18.)

11) 과학기술개발산업의 육성 및 과학기술산물개발에 따른 권리보호

(1) 정보산업의 육성

○ 최인수(고려정보산업)

DB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DB산업육성법』을 현재 정부의 정보산업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동 법안에 DB구축업·DB개발업·DB관련업의 개념규정과 금융 및 세제지원, 공동사업의 지원, 공공정보 공개, 정보취급전문가 자격제도 실시, 표준화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 (최인수, 『DB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내용』,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최·체신부 주관 'DB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993.6.23, 조선일보 1993.6.25.)

○ 정보산업기획단

정보산업은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저장 및 전송 등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정보이용의 극대화와 생산의 효율성 증가 그리고 유통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생산부문은 물론 행정과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제도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주무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정부소장 정보와 자료의 공개 및 비밀자료의 불법유출에 대한 방지대책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위 전자정보교환(EDI)의 시대에 대비하여 전산화된 각종 서식과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산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검색절차의 통일 또는 표준화 등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산업기획단,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시안, 1992. 11. 24)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정보산업의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투자에 상응하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고, 아무런 노력이나 투자도 없이 다른 업체가 제작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업체는 투자회수도 하기 이전에 파산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에 의하여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줄 법제도가 필요한 것인 바, 그 구체적인 보호방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법제도에 의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1989. 1.)

(2) CD-ROM 등의 전자출판

○ 세계일보

우리 문화산업은 이제 시발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문화산업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및 문화예술계간에 공동인식을 하게 된 것이 선진국에 비해 20년이나 늦은 셈이다. 문제는 선진국이 개발한 다양한 문화산업 제품들이 세계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상품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상품은 과거 「베껴내던」시절의 모방상품과는 질적으로 달라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 극히 어려운 첨단산업쪽에 치중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문화계의 최대 공동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전통문화소재상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어정보화를 위해 「종합국어대사전」을 전자사전(CD-ROM)으로 펴내는 것을 비롯해 기계번역, 문헌정보의 자동분류-검색시스템, 한글 주요글자꼴개발, 고전자료의 CD-ROM화 등이 우선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한 예들이다. (세계일보 93.9.1.)

○ 전자출판협회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종이책에 의한 정보전달 이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CD-ROM이라거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on-line database)에 의한 정보전달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전제가 되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의 CD-ROM이라거나 온라인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위 전자출판물에 관한 현행 조세제도는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법은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등은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은 이러한 면세대상으로서의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에 비하여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의 제작 및 보급이 지지부진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의 수입의 경우에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쉽기 때문에, 외국의 CD-ROM 등에 의한 과학기술의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출판의 현황과 전자출판물의 법제화방안, 한국전자출판협회 제2회 세미나, 1993. 6. 28.)

(3) 컴퓨터프로그램

○ 송상현(서울대 교수)

많은 논란을 거친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작권법적인 보호범위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효력범위에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이 조장될 수도 있고 오히려 억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이 긍정적으로 인정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선발업자들은 경쟁업자들을 상

대로 해서 저작권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분쟁의 초점은 주로 선발업자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는가하는 보호범위에 집중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코드까지 완전히 다 모방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명백하지만, 구체적인 코드는 상이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조, 흐름, 배열(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침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충돌과 팽팽한 의견대립이 드러났다.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법해석에 의해서 사법적으로 밝혀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프로그램의 구조, 흐름, 배열의 보호범위와 유사한 문제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메뉴는 어느 정도로 보호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화면은 프로그램과 그 이용자를 연결지워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interfaces)인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좌우하는 여타의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같이 프로그램의 구조, 흐름, 배열 등과 프로그램화면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흔히 후발프로그램업자들의 분석프로그래밍(reverse analysis)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송상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개정의견, 1992.2.)

○ 서울신문

컴퓨터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이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는 ①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고 ②불법 복제프로그램인 것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에 대여권을 포함시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 대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단순행정심의기구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분쟁에 대해 사전조정하고 감정기관도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④컴퓨터 바이러스를 불법제작 또는 배포하는 사람도

침해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신문 1993.1.6.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5면), 제5호(56면) 참조)

(4) 산업디자인

○ 정상조(한국법제연구원)

국제교역량이 증가하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한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첨단기술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의 모양이나 색채에 관한 이른바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중요성과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요구가 많아지고, 의장법과 저작권법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업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주도하에 마련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소유권 관련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둔켈 최종안도 산업디자인의 보호방법은 의장법 또는 저작권법의 어느 하나에 의하더라도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미의 의장법 제도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사이에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찾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해왔고, 최근에 여러가지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내의 경쟁제한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의장법과 저작권법 등의 보호법제의 상호조정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상조, 영미 산업디자인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월간 지적재산, 1993. 9)

○ 세계일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수준은 크게 낙후되어 있어 기업의 디자인개발부서 및 전문디자인용역회사가 부족한 실정인데, 외국바이어들이 디자인에 의하여 우리 상품을 구입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디자인과 포장개선을 통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 제품디자인 연구개발과 기업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6일 상공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과 연구, 제품디자인개발을 전담하는 전문용역회사 설립

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포장기금에 정부출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계일보 1990.6.27.)

(5) 의약품개발과 영업비밀

○ 박동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개정된 특허법은 물질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보호를 허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화학약품제조회사라거나 특히 의약품제조회사들로서는 과거처럼 외국의 화학물질 또는 의약물질을 모방하여 새로운 제조방법만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발명특허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및 의약물질을 개발하도록 연구개발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에 약사법 등에 의하여 의약품의 승인을 위하여 보건사회부 등에 대하여 신개발 의약품의 안전성과 화학구조 그리고 독성에 관한 자료와 의약품의 효력 및 생체내의 흡수등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게 될 것인바, 그러한 정보와 자료는 소위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줄 수 있는 철저한 절차와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의약품의 승인절차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새로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여부가 연구개발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동현, 첨단산업의 지적소유권 전략 - 의약품산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1992. 12)

(6) 특허공유

○ 세계일보

국내에도 특허공유(Cross license)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금성사 이헌조사장과 삼성전판 박경팔사장은 산업재산권 상호 사용을 위한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뿐만아니라 국내 기업간 기술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사간의 계약내용은 두 회사가 각각 4천여건씩 보유하고 있는 브라운관과 모니터, 액정화면표시장치(LCD)에 대한 총 8천여건의 국내외 특허기술을 3년간 서

로 제한없이 무상으로 공동 사용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3년간의 계약기간내에 취득하는 모든 특허도 서로 무상으로 사용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특허공유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의 특허공세에 공동대응하며 내실있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특허공유는 우선 국내 기술개발시 중복투자를 막아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인천제철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 철강업체들은 제강분진처리기술에 관한 특허를 놓고 특허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코닝과 금성통신은 물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결정화기술, 렉키와 한양화학은 PVC가공기술, 코오롱 동양나이론 선경인더스트리는 화학섬유제조기술 등을 상호이용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허공유가 일반화된지 오래지만 국내의 경우 특허공유의 싹이 제대로 자랄지 우려의 소리가 높다. 특허공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관련단체간 특허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는 노력과 함께 조세감면혜택 등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특허공유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세계일보 1993.4.24.)

2. 각계의견의 정리 및 평가

과학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두개의 극단인

-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이제는 정부간섭을 중단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는 정부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정부역할의 적극성의 정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입법의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입법의견도 이러한 견해차를 일부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의 중점을 생산기술진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두자는 입장에서 서 있는 입법의견은 정부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술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입장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산업지원정책이 정부개입형 산업화패턴을 취해온 결과 행정규제를 통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마구 침범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음을 문

제점으로 지적한다. 이 입장에 서는 경우 경제의 시장적응성을 높이고 각 부문에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제거함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자원이용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는 것이 산업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중구조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하여 발생한 왜곡된 자원배분 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제도의 자의적인 운영을 들고 있다.

그 반면에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전반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입법의견은 주로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촉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입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철저한 보호를 통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야 함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기관에 과학기술의 종합조정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정책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할 위원회가 기능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할 각종 연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연구기관 상호간 및 산업체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에 협동이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CD-ROM, 산업디자인, 의약품 등 각종 과학기술산물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환경을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개발된 기술과 창작물에 관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공유(cross license) 등의 국내적 기술협력력을 조장할 수 있는 법제도 특히 조세특혜 등을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세미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언론기관의 보도등을 통하여 드러난 이러한 입법의견은 정부입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정부 또는 의회가 입법을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의견의 결과에 따른 입법방향은 정부입법계획 및 입법추진현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Ⅲ. 과학기술관련법제의 현황, 정부입법계획 및 입법추진현황

1. 과학기술관련법제의 현황

현행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27조제1항)고 선언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정책수행의 의무중의 하나로 선언하고, 대통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7조제3항). 또한 현행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산물을 개발한 자의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호됨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규정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무의 수행 및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우리 정부에 과학기술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도록 규정함을 필두로 (정부조직법 제25조), 현재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여건에 달하는 법률 및 10여건에 달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 과학기술관련법제현황

| 대분류 | 소분류 | 법률명칭 및 관련조문 |
|---------|----------|---|
| 헌법상의 근거 | | 헌법(제127조, 제22조제1항) |
| 조직·기관 | 정부기관의 조직 | 정부조직법(제25조) 국회법(제37조제1항제7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의법 |
| | 국제기구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법률 |
| | 연구·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

| 대분류 | 소분류 | 법률명칭 및 관련조문 |
|-------|---------|---|
| 조직·기관 | 연구·교육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산업연구원법 산업기술정보원법 국방과학연구소법 한국국방연구원법 유전공학육성법(제16조)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제4조) 전기통신기본법(제10조) 통신개발연구원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17조) 해양개발기본법(제17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에너지경제연구원법 기능대학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민법(제32조) |
| 지원·육성 | 진흥·촉진 | 과학기술진흥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능장려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유전공학육성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공업발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대분류 | 소분류 | 법률명칭 및 관련조문 |
|-------|---------------|--|
| 지원·육성 | 진흥·촉진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안전법(제26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해양개발기본법 해운산업육성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관리특별회계법 |
| | 자금지원,조세감면 | 기술개발촉진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관세법(제28의5제1항제5호, 제6호) |
| | 기술이용의 활성화 | 의자도입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기금의 설치·관리 | 한국과학재단법 |
| | 과학학술 및 교육의 진흥 |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학술진흥법 |
| | 전시관 설치·육성 | 과학관육성법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
| | 국제협력 | 특허협력조약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센터설치협정 한불과학기술협력협정 한독과학기술협력에관한협정 한일과학기술분야협력에관한협정 한영과학기술협력에관한협정 |

| 대분류 | 소분류 | 법률명칭 및 관련조문 |
|------------------------------|----------|---|
| 지원·육성 | 국제협력 |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 한한미협정 |
| 시설의설치기준 허가·감독 등 | | 원자력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전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
| 과학기술산물을 개발한 자 및 그 권리보호 | 인력의 육성 |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0호)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9호) |
| | 자격관리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변리사법 |
| | 개발산물의 보호 | 발명보호법 특허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 과학기술산물의 규격·품질관리 | | 산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
| 과학기술개발과 환경파괴간의 조정 | | 환경정책기본법(제11조) 자연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소음·진동규제법 |

| 대분류 | 소분류 | 법률명칭 및 관련조문 |
|-------------------------|-----|--|
| 과학기술개발과 환경파괴간의 조정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 등에관한법률(제29조) |
| 기업의 비밀보호 | | 부정경쟁방지법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
| 피해구제 및 책임 | |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 관한 현행국회제정법률은 90건이상이 된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을 포함하면 과학기술에 관한 현행법령은 200건을 상회한다. 앞서 언급한 입법의견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제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법제개선은 현행법제에 대한 현황파악, 문제점의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제개선에 관한 입법방향을 제시에 있어 또한 수반되어야 할 점은 정부의 입법계획 및 입법추진현황을 파악하는 길일 것이다.

2. 정부의 입법계획

1) 「신경제5개년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을 위 법제개선계획³⁾

새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경제개혁과 경제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신경제」의 발전방향, 「신경제100일계획」의 추진등을 다룬 제1차 보고서와 「경제개혁과제보고서」 및 「경제시책중점과제보고서」 등의 본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중에서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계획 중 법제개선계획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경제시책중점과제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보았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새정부

3) 출처 : 신경제 5개년 계획(93-97년) 경제시책 중점과제 보고서, 1993.7, 대한민국정부, 제2절 기술개발전략

가 집권기간동안의 경제운용을 위한 청사진을 밝힌 것이므로 이 계획에 포함된 법제개선계획은 정부입법계획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정부입법계획의 하나로 평가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신경제 5개년 계획(93-97년) 기간동안의 기술개발전략

(1) 계획기간중의 기술발전목표와 기본전략

목 표

- 21세기초 기술선진국 비약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 -

- 97년까지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시장에서 주력상품이 될 특정분야의 전략핵심 기술을 세 계일류수준화하여 초기에 상품화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배양과 기술비약을 위한 기초연구의 자립기반확충
- 교통·환경·보건의료기술 등 당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 기술을 조 기에 향상시켜 국민의 편익을 제고

기본전략

- 「신경제」건설의 핵심적 뒷받침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술혁신체제를 확립 -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하고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활동을 최대한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시장수요지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해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동체 제를 구축하고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강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체 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2)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 확립

기본방향

- 자주적 기술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민간연구개발조직의 활성화
- 실용성 위주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기능의 강화
- 산업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연구개발인력의 양성 확대 및 정예화
- 기술개발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조세등 우대방안 강구
- 기술개발관련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 지향적 사회풍조의 조성

① 민간연구개발조직의 활성화

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독립법인 설립 촉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완화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 :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검토
- 군역특례업체 요건 완화
-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도 제조업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자금등 혜택 부여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활성화

-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급 확대
- 연구조합의 질적 수준 향상과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②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서비스기능의 강화

가. 기술정보수집의 총력체제 구축

- 해외기술정보의 수집체제 강화
- 수집된 정보가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로 집결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성

나. 기업이 활용가능한 기술정보의 생산·공급

- 실용성 위주의 전문분야별 D/B 구축·활용 강화
- 기술정보유통망을 확충하여 전국적 동시이용체제를 구축
- 기술정보전문 민간 D/B회사 설립 유도

③ 연구개발인력의 확대 및 정예화

- 자연계 대 인문사회계의 입학정원 비율을 현재 54:46에서 이공계대학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조정하고, 우수 이공계대학을 대학원 중심체제로 육성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정원을 석·박사 위주로 증원하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수익자 부담을 강화
- 광주과학기술원을 정보통신·신소재·매카트로닉스 분야의 특화인력 배출

전문기관으로 조기 완공

- 유능한 해외교포 과학기술자를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Brain Pool제도를 활성화

④ 조세우대 및 금융공급 원활화

가.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우대

-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확대
- 연구시험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술진보추이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첨단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확대
- 기업연구소가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연구용품의 사후관리 기간을 지자체의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견품 및 부품등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및 기술개발비의 범위 확대

나. 기술개발금융의 공급 원활화

- 기술개발금융규모의 확대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활성화
- 기술성 위주의 심사제도 강화
- 기술개발자금사용에 의한 기술개발성과가 차기자금 공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
-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기술개발지원전문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뒷받침
- 기술복권 및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하여 기술금융재원 조성을 확대
- 기술금융정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술금융정보센터」 설립·운영

⑤ 기술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규제완화

- 산림보전지역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1만㎡이내만 건축이 허용되는 것을 2만㎡이내로 확대

-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한 연구소설립을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완화
- 해외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송금범위를 확대하고 송금한도액을 상향 조정
-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연구시험용 의약품 또는 시료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무환수입만 허용되는 것을 연구시험용일 경우 유환수입도 가능토록 조치
- 민간기업이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현지 대한민국공관장의 연구소설립 확인절차 폐지
- 군역특례연구요원의 해외여행시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절차를 해당기관장의 추천으로 완화

나. 산업재산권 제도의 개선

- 심사관, 심판관 인력체계 세분화, 자격요건 강화 등 특허행정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추진
- 실용신안 심사인력을 특허심사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용신안 무심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
-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시기를 등록후 일정기간내로 변경하여 심사처리기간을 현행 2년 10개월에서 3개월이상 단축

다. 조세감면관련 절차의 간소화

-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감면절차중 과학기술처 신고절차를 폐지
-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절차중 과학기술처 확인업무를 민간에 위탁
-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시 관할지 세관과 통관지 세관에서 각각 받도록 되어있는 사전설치 사용장소 확인서를 통관지세관에서만 받도록 간소화
- 연구용물품중 관세감면품목의 사용장소 이전시 변경전 관할지 세관의 사전승인제를 재해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구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3)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체제의 강화

기본방향

- 국가차원의 기술수요조사, 중장기 기술예측 및 기술개발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
- 정부 출연연구소가 민간의 기술개발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편·보강하고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 선진기술권역과의 기술협력 강화 및 첨단기술이전을 촉진

① 기술예측 및 연구기획·평가기능 강화

- 단기적인 기술수요조사와 중장기 기술예측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의 기술개발계획 수립과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공급을 확대
- 정부가 추진 또는 지원하는 주요기술개발과제의 기획 및 평가기능을 강화
- 단계별 목표관리제 도입등 개발과정별 연구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여건 변동에 따라 개발과제의 과감한 도태와 추가가 용이하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을 추진

②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

- 지역별로 기업과 대학이 연계되는 연구개발컨소시엄 형성을 적극유도
 - 산·학·연 협동연구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
 - 산·학·연간 인력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연구원의 상호 겸직을 허용하고 겸직에 따른 신분·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협동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의 알선·중개등 업무를 담당할 전담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원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에 우선권 부여등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
- ⇒ 협동연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일본의 「연구교류촉진법」 및 「창조과학기술촉진제도」, 미국의 「국가공동연구법」 및 「특허관리법」등의 발전적 수용방안 강구

③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 촉진

- 실용화지원조직의 강화
-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
- 신기술제품의 수요확보지원 강화
 - 정부구매제도를 기술혁신지향체제로 보강
 - 발주부처별 신기술제품에 대한 종합낙찰제 적용 확대
 - 국산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기술집약형 소재·부품등 중간재를 중점대상으로 한 「국산신기술인정마크」제도 도입 및 조세·우선구매등 관련시책과 연계방안 강구
 - 신기술제품에 대한 국산피해구제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

④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체제 개편·보강

-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연) 연구개발체제를 개편
 - 출연(연)의 기능을 담당분야별(예 : 산업기술담당, 공공기술담당, 종합연구등)로 특성화·차별화하고 기관특성에 따라 운영체제를 개편
 - 정부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출연(연)자체의 능동적·자율적 혁신을 유도
 - 출연(연)의 조직단계를 축소하여 보직자 수를 줄여나가고 조직운영을 연구중심체제로 전환
 - 연구비 지원방식을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본방향

- 과학기술투자재원의 최대한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활용을 위한 종합 조정기능의 강화
- 기존 기술개발사업을 보완·개발과 함께 중간핵심기술 등 취약부문의 기술개발을 추진
- 첨단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개발기술의 조기 상품화 추진
- 대학의 창조적인 연구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한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환경등 공공복지기술의 적극개발

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
- 정부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하여 계획기간중 연구개발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제고
-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중을 98년까지 4%로 확대
- 한정된 연구개발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활용을 위하여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개편하되,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

②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강화

2)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정부 법제개선계획⁴⁾

정부는 1993년 3월 23일 “경제행정규제완화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중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는 바, 이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해 보았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원의 자격기준 완화
 - i) 대기업 : 자연계분야 학사 또는 기술계기사 1급 이상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 또는 기술계 기사2급 이상의 자중 일정 기간 실무 종사자
 - ii)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특정분야에 한해서 자연계이외의 학위 소지자도 예외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현재 정보처리업만 예외인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종합연구소에 대한 규정 신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 기술개발촉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도의 폐지

4) 출처 : 대한민국정부, 경제행정규제완화세부추진계획, 1993.3.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조)

○ 원자력법시행령 개정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시설검사의 완화
허가사용자의 경미한 시설변경시 : 검사 생략
신고사용자의 시설변경시 : 검사 생략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
- 방사성물질의 운반검사 유효기간 연장(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원자력법시행령 제237조)
- 방사선피폭관리기록 보고체계의 개선
 - i)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에서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을 의뢰받은 전문판독업체가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
 - ii) 방사선피폭등록센터(가칭) 신설
종사자 개인별 방사선피폭선량 및 각종 자료를 영구보존
각 개인에게 방사선피폭선량을 통보
(원자력법시행령 제323조제1항제5호, 제324조제6항제2호)

○ 외자도입법 개정

- 외국인증액투자인가 및 그에 따른 조세감면결정 절차 개선
관계부처 협의생략 : 단순자의 경우 및 당초 감면결정된 것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의 조세감면 결정시.
(외자도입법 제7조의3, 제14조, 제16조)
- 외국인투자신고서 처리절차 개선(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
(외자도입법 제7조의2)
- 외국인투자자금의 사용관리 개선
투자자금 사용 및 인출 계획서의 제출 및 지정거래은행 선정제도 폐지
(외자도입법 제13조의2)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절차 개선
신고서 처리기간 단축(20일 → 10일), 신고대상기술을 조세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로만 축소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매각 등에 관한 허가사항의 일부 폐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의 매각에 대하여는 허가를 사후보고로 대체

(외자도입법 제27조)

- 외자도입심의위원회 폐지

(외자도입법 제37조)

○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

- 상업차관계약 심사사항 및 인가절차의 개선

심사사항의 대폭 축소 및 처리절차상 외자사업심사위원회 상정 폐지 또는 상정 대상의 축소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1조, 제40조)

3. 입법추진현황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3년도 정기국회에 160여건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개혁입법안들은 연초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가 개혁을 위하여 계획·입안한 200여건의 법률안중 부처간 협의 및 입법의견수렴, 입법예고의 단계등 각종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 또는 추가되었으며, 법안 중 일부는 보류되기도 하였다. 제기된 각종 입법의견중 입법에 반영되어 실정법화하면 입법“의견”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므로, 입법추진현황의 파악은 곧 입법의견의 입법현황의 파악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의결을 겨냥하고 추진중인 입법안 못지않게 입법이 보류된 입법안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단 법안으로 조문화의 단계를 거친 사안이니만치, 정부부처간의 조정, 각계의견수렴을 통한 수정의 단계를 거쳐 언제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진중인 입법안 및 입법이 보류된 입법안은, 정부입법안의 경우 법제처가 각부처의 계획을 수집하여 작성·발간한 정부입법계획·동수정계획 및 수시로 작성하고 있는 정기국회제출예정법률안 추진상황표에 입각하여, 의원입법안의 경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협조에 입각하여 조사되었다.

1) 1993년 정기국회 추진 정부입법⁵⁾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계 특별보좌관제 설치 ● 자문회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7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8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대덕연구단지관리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단지개발완료에 따라 관리근거법 신설 ● 입주단지의 지정·변경·녹지보존 및 환경유해업소규제등 연구단지관리·운영의 효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5월 ● 부처협의: 5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연구개발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시행 ● 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우선 및 우대지원제도 강화 ●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협동연구과제의 적극 수용하도록 제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4월 ● 부처협의: 5월 ● 입법예고: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9월 |
|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절차 간소화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강제제도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7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8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5) 출처 : 법제처, 1993년도 정부입법계획수정계획(안), 1993.7.; 동, 정기국회제출예정법률안 추진상황표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방사선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지 조성사항과 지역 지원사업 등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6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외자도입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신고서 처리절차 간소화 ● 기술도입계약 신고처리 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6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특허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의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반환 ●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시 우선권주장서류의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6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실용신안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심결확정된 실용신안등록의 등록료를 반환 ● 우선권주장서류를 변경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6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의장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등록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의 이미 납부된 등록료 반환 ●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6월 ● 부처협의: 7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9월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프로그램대여권을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로 인정 ● 불법 복제품인줄 알고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92년 6월 ● 부처협의: '92년 6월~12월 |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 프로그램저작권 사전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감정기관 추천 기능 부여 ●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1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10월 |
| 저작권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보호 명문화 ● 교과용도서의 보상금면제규정 삭제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판매용음반의 대여권 인정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허가제 폐지 ● 벌칙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6월 ● 부처협의: 6월 ● 입법예고: 7월 ● 법제처제출: 10월 ● 국회제출: 10월 |

2) 입법추진이 보류된 입법안

(1) 입법추진이 보류된 정부입법안⁶⁾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산업기술대학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대학을 설립 ● 기술중심의 전문학위인정 ● 교수요원은 산업현장근무 경험이 있는자에 한정 ● 입학대상은 산업체 현장근무자 위주 | 미정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법정법인화 | 미정 |
|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실용계획수립 ● 정보산업발전기금 설치 ● 정보산업 관련 표준화의 추진 및 기반기술의 개발 ● 지식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지공급 특례제도규정 | 미정 |

6) 참고자료 : 법제처, 1993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993.4; 법제처, 1993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안), 1993.7.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정보화촉진및정보통신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첨단정보통신기술개발을 촉진 ● 정보처리 관련사업 지원강화 | 미정 |
| 정보산업육성특별법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산업촉진 및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정보산업육성추진체계를 정비 ●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의무화 ● 정보산업관련업체에 대한 조세감면과 정보산업입지의 조성, 구매촉진 및 해외진출지원 ● 정보통신종합기술연구소 설치 ● 정보산업진흥기금 및 정보산업진흥공단 설치 | 미정 |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감리를 받도록 하고 전산감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 ● 전산감리업무를 수행할 공인전산감리사의 자격제도를 신설 ● 전산망조정위원회 밑에 전산감리위원회를 둠 | 미정 |
| 유전공학육성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 의 심의사항에 “생물학적 다양성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중요정책 및 국가행동”을 추가 ● 유전공학육성시책에 “유전공학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조항을 추가하며 유전공학연구소가 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유전공학연구 및 생물학적 다양성 이용보전기금 조성 | 미정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및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도화함 ● 환경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및 환경기술개발추진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의 근거 마련 | 미정 |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제 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개발기금의 설치 ● 환경기술개발원 설립 ● 환경종합연구단지 조성 ● 기업의 저오염제품의 개발촉진과 소비자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표지제도 실시 | 미 정 |
| 위성통신법 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위성발사에 대비하여 위성통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위성통신사업의 지원 육성 | 미 정 |
| 항공우주산 업개발촉진 법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 중 항공우주분야를 항공우주산업에 추가하 여 종합 육성 ● 항공우주산업기획단 설치 및 기획단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항공우주산업기금 조성 ● 생산증명체제 확립 | 미 정 |

(2) 입법추진이 보류된 의원입법안⁷⁾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 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공부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합리적 배 분·활용을 위하여 정부과학기술예산 연도별 증가 율을 정부전체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의 무화하는 동시에,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 규모 에 대한 조정제도를 도입함. ●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양성·확보를 위하여 산업 체가 설립·운영하는 사내 기술대학(원) 수료자에 게 준학사 및 준석사 졸업증을 교부하고, 국내 연구 인력의 해외연수와 외국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함. | 미 정 |

7) 김채경의원, 조홍규의원, 김정남의원외 30인,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안, 1992. 11. 6. * 이 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법률안을 기초로 한 것임.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 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를 종합관리할 한국연구개발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의 이용에 광범하게 제공하도록 함. ●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연구 체도를 도입하여 조세·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과 중소기업 근무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함. ● 협동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간의 인력교류를 정원의외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치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기업화 사업을 적극 지원함. ● 국내 개발제품으로서 시험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양으로도 시장수요의 상당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생산시설을 제조시설로 간주함.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기술용역 등 지식산업이 제조업과 대등한 조세·금융·구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

IV. 입법방향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입법방향은 결국 과학기술의 혁신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또 이를 위하여 법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귀결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어떤 개념으로, 어떤 범위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과학이란 “일반적인 진리나 법칙에 의해 체계화되고 확립된 지식을 축적하고

수용하는 활동”으로, 기술이란 “과학적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거나 질적으로 뛰어난 신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최첨단 기초연구의 연구동향을 보면 과학적 발명·발견으로부터 실용화까지의 시차(time lag)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전공학·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실험실의 연구성과가 별도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품화되는 등 과학·기술·생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과학적 발명·발견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발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성과가 과학연구를 가속화시키는 “과학과 기술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의 진보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신기술이 과학연구를 자극하는 경향에 따라 과학과 기술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양자의 구분이 곤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복합된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을 일체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과학기술처를 정부부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기술의 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시험평가, 생산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들 중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개발의 전단계는 “연구개발영역”으로, 개발의 후단계로부터 엔지니어링·시험평가·생산·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은 “산업기술개발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영역과 산업기술개발영역간에도 그 공명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사회”라고 불리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단순히 방임할 수는 없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총체적 혁신을 위하여 계획하고, 형성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까지를 담당할 책무를 지고 있다. 현행 헌법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27조제1항)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현대국가의 책무를 우리 국가가 담당할 것을 헌법상 선언한 것이라 생각된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200여건의 법령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과학기술관련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입법의견을 받아들여 필요에 따라 국가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고 수시로 이를 개정하여 나가기도 한다.

정부의 입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조사되어 있는 입법의견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입법계획 및 입법안에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개정은 과학기술관련 국가위원회의 체계화를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정안은 수년간에 걸쳐 제기되어온 산·학·연간의 협동연구의 촉진을 위한 법제정의 수요를 받아들여, 협동연구개발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의 제·개정을 도모하고 있음과는 달리 기술개발촉진법 및 외자도입법개정안은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과학기술의 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측면으로 법의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의 개정안은 과학기술 산물 및 이를 개발한 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을 정비함으로써 과학기술산물의 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 다만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등과 같이 과학기술혁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가운영 전반에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하여는 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하여 입법을 보류하고 있음이 눈에 들어온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입법이 입법정책 및 입법수요를 받아들여 과학기술혁신에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법제정비방안은 끊임없는 연구속에 개발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수요의 개발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행 과학기술관련제도 및 법제를 체계화하고 꾸준히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법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하기 위하여는 현행 실정법의 체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법조인 뿐만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할 일반국민이 어느 법이 일반법이며, 어느 법이 특별법이고, 어느 법이 현재 효력을 갖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여건에 이르는 현행 과학기술관련법령중에는 그때그때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이 산재해 있어 우리 실정법이 현재 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 회의가 제기되고 있고, 우리 현행법제 자체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바른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는 원천적으로는 현행법제의 포괄적 재검토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현행법제를 제도전반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우선 기본적·원칙적 내용을 가진 법령과 특별한·예외적 내용을 가진 법령을 구분해내어 국가적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며, 과학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개발되는 과학기술산물이 보다 적절히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 분 야 |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
|------------|--|
| 憲 政 |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
| 統一·外交·國防 |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
| 內務·地方行政 |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
| 社會·文化·教育 |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
| 產 業·經 濟 |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
| 農 林·水 產 |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
| 建 設 |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
| 科學技術·交通·遞信 |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
| 環 境·保 健 |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
| 法 院·法 務 |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

1. 최근입법의견목록

- ◎ 憲 政 62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회사무처법 개정의견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정당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 統一·外交·國防 7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의견
 - 남북한문제관련 입법의견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 內務·地方行政 74
 - 감사원법 개정의견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내부고발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여권법 개정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 社會·文化·教育 77
 - 고용보험제관련 입법의견
 - 고용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가칭) 제정의견
- 관변단체육성관련 입법의견
- 교육법 개정안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이익집단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産業・經濟 83

- 공산품형식승인제관련 입법의견
-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금융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담배사업법시행령
- 도소매업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상속세법 개정의견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 소득세법 개정의견
- 신용카드업법 개정의견
- 예산회계법 개정의견
- 유통산업구조개편관련 입법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적소유권관련 입법의견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개정의견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 ◎ 農林·水産 9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양곡관계법 개정의견
- ◎ 建 設 94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설업법 개정안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 토지초과이득세제관련 입법의견
- ◎ 科學技術·交通·通信 101
 - 교통시설건설촉진및민자유치법(가칭) 제정의견
 -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 ◎ 環境·保健 102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관련 입법의견

- 약사법 개정의견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안
- 지하수법(가칭) 제정안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의견

◎ 法院·法務 106

- 거창양민학살사건피해자및유가족의명예회복을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의견
- 낙태관계법 개정의견
- 사법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3. 9. 11. ~ 1993. 10. 10)

◎ 憲 政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윤리적 또는 법적인 양면에서 공직자들을 징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재산공개와 근본취지가 공무원의 부정 방지에 있다면 법에 의해서만 등록재산의 취득에 따른 위법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점은 물론, 재산은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존·비속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내역의 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임(양승두 연세대 교수).
-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재산내역만 빼놓지 않고 등록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이나 금융실명제 정착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문제성 있는 금융자산만 실사를 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므로 자금원천과 공직이용 축재를 밝혀 징세와 처벌을 가하여야 함(이진순 숭실대 교수).
- 공인인 공직자는 금융실명제의 개인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등록을 입수하여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의 금융자산을 전면 실사하여야만 깨끗한 공직풍토조성도 기하고 처음 가동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뢰도 두터워질 것임(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 세계 93.9.13., 8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 제8호(63~64면) · 제9호(84~85면) · 제11호(65면) 참조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의회의 자치단체감사 요구 등은 여야가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로 반영하여 나아갈 것임(김영구 민자당 원내총무).

- ①지방의회의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정감사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61조에 위배됨. 만약 지방의회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한다면 국회의 감사권을 또 하나의 기관위임사무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 아니라 국회의 하급기관의 지위에 머물게 되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②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는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분을 명백히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③국가사무의 각종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행하여져야 함. ④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이들에게 국가위임사무의 감사를 맡길 경우 국가사무가 지역적 이기주의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폐단이 생길 위험성이 있음. ⑤국정감사권의 본질적인 의의는 야당의 행정부 통제기능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국정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줄 경우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야당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위임사무에서 발생한 비리를 면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 국가위임사무가 점차적으로 자치사무로 이관될 때까지 국회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강수립 민주당의원).
- 자치단체는 개별법에 의하여 감사원과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의 감사를 받고 있고 여기에 자체감사, 지방의회 감사까지 받고 있어 국감은 자치단체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다른 나라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국감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정비리를 정책을 세우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른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할 경우 국정감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임(박상천 민주당의원).
-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국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

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 ①지방의회의 감사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중요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 ②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예산지출과 현장확인답사 등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전문위원이나 보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 ③최소한 약 20일간의 감사기간이 요구되는데 현행 5일간의 지방의회 행정감사만으로 국감에 필적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한 후 국감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임(문일권 서울시의회 부의장).

-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①중앙과 지방이 병렬·협동의 동등한 관계라는 지자체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②국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감대상이 아닌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현실적으로 구별할 수 없고, ③설혹 구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지방의회의 고유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고, ④국감대상기관이 많은 터에 광역자치단체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⑤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부당한 것임(한근복 경기도의회의장).
- 자치단체 사무중 70% 이상이 국가위임사무인데 선출직도 아닌 정부에서 임명한 단체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 국가위임사무가 점차 자치사무로 이관될 때만이 국감이 폐지될 수 있을 것임(오석홍 서울대교수).
-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행정처리대상이면서도 많은 사무가 다시 다른 법에 의해 국가사무로 묶여 있으므로 모든 관련법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현행 법상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해서 국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야 될 것임. 그러나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국회에서 지자체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방에 자치권을 대폭 이양하여야 할 것임(최창호 건국대 지방자치학회장).

: 한겨레 93.9.25.,2면; 국민 93.9.25.,19면; 동아 93.9.26.,2·3면; 한겨레 93.9.26.,2면; 경향 93.9.26.,2면; 서울 93.9.26.,2면; 서울 93.9.28.,23면; 서울 94.9.23.,6면; 서울 93.9.29.,6면; 세계 93.10.4.,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69~70면) · 제11호(66면) 참조

○ 국회사무처법 개정의견

- 법제처가 정부입법을 지원하듯이 의원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법제기구의 강화가 필요함(이만섭 국회의장).
 - 국회사무처에서 의원활동을 지원하지만 지나치게 의사진행에 편중되어 법제기능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므로, 의원입법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시행령도 법취지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국회의 법제기능 강화가 시급함(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 한겨레 93.10.3. 2면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장선거법을 통합하고, 선거연령은 20세로 함.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①선거범죄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벌금 · 집행유예는 6년 징역은 10년간) 및 공무담임권 10년 박탈, ②선거사무장이나 후보자 가족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하였음. 선거구획정은 ①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②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며, ③국회의원 최대 ·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례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①선거기간은 대통령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 장 선거는 15일로 하고, ②선거일을 법정화하고, ③선거운동을 포괄적 제한 · 금지에서 개별적 제한 · 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④선거운동의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공보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 발송우편료, 투 · 개표참관인수당, 철도이용승차권(대통령 선거) 등은 무조건 부담하며, 선전벽보 작성 · 첨부 · 철회비용, 방송연설비용(대통령 및 시 · 도지사 선거) 등은 일정기준 이상 득표시 보전하며, 방송연설, 경력방송은 무료로 하고, ⑤후보자는 명함형 소형인쇄물 1종만을 작성 ·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⑥후보자 가두연설을 무제한 허용하고 사회단체의 후보초청 토론회를 허용하였으며, ⑦연설회장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⑧극소수의 선거사무원 외에는 수당 · 실비 지급을 금지함. 선거비용과 관련하여서는 ①기부행위제한기간을 선거일전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로 연장하고, ②선거비용을 비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제한방식으로 전환하

여 후보자 등록전 사전선거운동비용과 불법선거운동비용 및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등과 통모하여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고, ③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화하여 대통령선거 1백 16억원, 국회의원선거 4천 5백만원, 시·도의원선거 1천 4백만원, 시·도지사선거 4억 5천만원, 시·군·구의원선거 1천만원, 시·군·구의 장선거 4천 3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 제출시 모든 수입·지출내역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고 수입·지출보고서와 명세서는 일정기간 선관위에 비치하도록 하며, 일반인의 열람 및 교부, 이의신청을 허용토록 함. 또한 언론인도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정당과 관련하여서는 ①기초의회·장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②정당대표가 당원에게 보내는 격려서한을 1회로 제한하며 그 배부·발송전에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③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을 선거일전 1백 2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하며 그 선거기간중 개최횟수도 읍·면·동수로 제한하고, ④ 관할 선관위에 사전에 신고하며 당원단합대회에서의 다과·음료제공을 금지함. 이 밖에도 ①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 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도록 하고, ②전국구 의석을 득표비로 배분하고, ③동시선거에 대비한 규정들을 신설하고, ④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연좌제를 확대(대통령선거 제외)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며, ⑤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1년(도피시는 3년)으로 연장하고 그 재판은 제1심은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3월 이내로 하여 신속히 종료되도록 함(민자당,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가칭)」제정안).

- 민자당의 선거법 개정안 중 연좌제의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가족 가운데 연락소장까지 포함시키면 자칫 상대당의 공작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소장은 제외시켜야 하고, 후보와 정당에 대한 1인 2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하며, 전국구의 시·도배

분,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의 존치, 선거사범 재정신청제 도입의 허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민주당).

- 우리의 정치풍토는 정책위주가 아니고 인물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정책대결이 어려우므로 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정책위주의 책임정치가 펼쳐져야 영국의 선거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임(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민자당이 마련한 통합선거법시안은 각종 선거의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상한선을 대폭 축소하고 유급선거운동원이나 현수막 등을 없앴으며, 기부행위금지기간을 크게 늘려 선거에 돈이 들어갈 수 없게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후보 뿐만 아니라 운동원이나 후보가족이 선거법을 위반하여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영국식 연좌제를 도입하고 상당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은 물론 공무담임권까지 박탈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규제조치를 두고 있어 매우 혁신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어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의 선거풍토는 획기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임. 영국이 선거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도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지킨데 있었던 만큼, 선거제도 개혁은 준법정신과 개혁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를 확인시켜 국민이 법실행을 믿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엄정중립적인 법집행을 보장하는 장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경향신문 사설).
- 이번 민자당의 선거법개정시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을 4천 5백만원으로 최소화했는데 이 비용은 한 차례의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 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물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합동연설회를 없애고 유급선거운동원을 없애다시피 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과 당원 단합대회 등을 단축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한다 해도 선거비용을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러워서 유급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결국은 음성적인 선거비용이 더욱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실천이 어려울 듯한 규정들을 근거로 선거비용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일정기간 공직박탈까지 하도록 이

른바 '연좌제'까지 동원하여 규정하는 것은 그 의지와 이상은 좋다 하여도 오히려 법의 실천가능성을 줄일 우려가 있음(한겨레신문 사설).

: 동아 93.9.11.,2면; 한국 93.9.11.,2면; 한겨레 93.9.11.,1면; 경향 93.9.11.,2·4면; 서울 93.9.11.,2·4면; 세계 93.9.13.,9면; 동아 93.9.23.,2면; 경향 93.9.28.,4면; 한겨레 93.9.29.,4면; 경향 93.10.8.,3면; 서울 93.10.8.,3면; 국민 93.10.8.,2면; 조선 93.10.9.,2면; 한겨레 93.10.9.,3면; 경향 93.10.9.,4면; 한국 93.10.10.,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제6호(66~67면)·제7호(58면)·제8호(65~66면)·제9호(7~41면)·제10호(70~72면)·제11호(66~68면) 참조

○ 정당법 개정의견

- ①공무원과 교원 외에는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전면허용하는 한편, 당원의 당지납부제도를 의무화하고 당비납부의 무 불이행 당원의 제명과 권리행사 제한 등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 ②정당설립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정지구당수를 국회의원 선거구의 5분의 1(48개) 이상에서 시·도 총수(15)개 이상으로 완화함. ③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함(민자당, 「정당법개정안」).
-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나 통·반장, 관변단체의 임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법정 지구당수를 24개로 규정하며,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회의원 등 각급 선거후보자의 공천과정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공천자의 선정 또는 확정시 해당 당부 대의기관(지역구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지구당 대의원대회, 시도지사 후보는 시도지부 대의원대회 등)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토록 하여야 할 것임(민주당).
- 정당이 깨끗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당원이 많이 입당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자격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야 하여 유능한 인재가 적은 돈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고 정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헌개정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 사

고당부에 대한 기준강화, 대의원에 의한 대의기관 구성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별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시·도지부대의기관에서 각각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현역 지구당위원장들이 지구당 대의원들을 장악하여 사실상 신진인사의 공천 및 문제인사의 물갈이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임(박상천 민주당의원).

: 서울 93.9.11.,4면; 세계 93.9.13.,9면; 조선 93.9.14.,4면; 동아 93.9.16.,4면; 한겨레 93.9.16.,2면; 서울 93.9.16.,3면; 조선 93.10.9.,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제6호(68면)·제8호(66면)·제9호(42~49면)·제10호(72~73면)·제11호(68~69면) 참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당비납부 상한액을 연간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백분의 5 중 다액으로 정하고, 후원회 회원수를 중앙당 2천명, 시·도지부 5백명, 지구당 및 개인 3백명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후원회원 등은 1백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기부할 수 없도록 함. 또한 후원회의 연간 모금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정당·후보자후원회에 한하여 1회로 제한하고 정치자금 수입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의 지출·경리상황을 조사·확인하도록 함. 정당은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와 결산내역을 선거일후 30일까지 관한 선관위에 보고토록 하고 회계보고시 지출증빙서류의 첨부를 의무화하며,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자체감사기관 책임자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회계보고내용의 일반공개 및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선관위의 실사권을 인정함(민자당, 「정치자금법」 개정안).
- 국고보조금의 경우 현행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증액하여야 하고, 정치자금기탁제 중 지정기탁금제는 정치자금이 여당에 편중되는 것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어왔으므로 폐지하여야 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의 지구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수를 중앙당은 현행 1천명에서 2천명으로, 시도지부는 3백명에서 5백명, 지구당은 2백명에서 3백명으로 각각 늘리도록 하여야 함. 정치자금기부증서에 의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허용하여 야당에 대한 자금후원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도 기부가 가

능하도록 하는 한편, 정경유착의 위험이 있는 소수다액주의를 소액다수주의의 대중모금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부증서의 종류는 1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세가지로 구분토록 함. 또한 상대적으로 야성이 강한 노조 등 노동단체와 언론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치자금의 회계내용을 심사하여 공고토록 하고 선관위보고내용의 일반열람을 허용하여야 함(민주당).

- 우리사회 전체를 부패와 비리의 사슬구조로 만든 주범은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치자금 수급의 공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조달방법과 사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일반에게 회계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 등 중립적인 기관의 실사를 받도록 하여 허위보고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고 장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소수의 거액조달자에게 의존하여왔는데 이는 결탁이나 유착의 기회를 만들었으므로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구당 후원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된 후원금의 상한선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할 것임(이정희 외국어대 교수, 당면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주제발표, 1993.9.9).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정치자금의 공급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어 선거비용의 규제장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히 할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천권을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지고 후보자 선정과정을 민주화하는 법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임. 후보자추천을 당총재를 비롯한 소수의 당지도부가 결정하고 있어 돈이 작용할 소지가 높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당원의 당비가 정당의 주된 정치자금원이 될 수 있음(양건 한양대 교수, 당면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금융실명제와 선거제도의 개혁' 주제발표, 1993.9.9).

: 서울 93.9.11.,4면; 한겨레 93.9.13.,2면; 세계 93.9.13.,9면; 조선 93.9.14.,4면; 동아 93.9.16.,4면; 한겨레 93.9.28.,1면; 조선 93.10.9.,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50·59면) · 제10호(50~59면) · 제11호(69~70면) 참조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정치적인 대표기관이며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함(이기우 인하대 교수).
-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기능구분이 명확해지도록 현행 57개의 자치사무(농지개발, 환경보전, 방범 등)의 예시를 늘리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등 예시된 기능을 지자체에 돌려주어 국가와 지자체간의 기능을 배분하여야 함. 또한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으로 확대하고 조례에 의한 벌칙의 규정범위를 확대하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은 위임사무에 한정토록 하는 등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보로 자치권을 보장하여야 함.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보좌관제의 도입과 의정활동비의 신설, 연간회기일수의 연장, 행정사무감사의 자율성 강화 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함(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중앙정부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국회가 지방자치정신을 수렴하여 법을 개정하여야만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임(지병문 전남대 교수).

: 세계 93.10.4.,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2~73면) · 제11호(70~71면) 참조

◎ 統一·外交·國防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미보훈당국에서 최근 실시한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호치킨임파선암과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2개의 질병이 새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로 함(보훈처).

: 세계 93.9.27., 23면; 서울 93.9.27.,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6면) · 제6호(69면) 참조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최근 학부수준에서 '북한학과'가 처음으로 신설되는 등 북한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현실적 차원에서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는 북한자료에 대한 비공개, 제한적 공개, 관변학자나 관변언론에만 주로 제공하는 선별적 공개를 전면적인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히 요구됨(강정구 동국대 교수).

: 한겨레 93.9.21.,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67면) · 제9호(87~88면) 참조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의견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민통선의 일부지역을 북상조정하는 한편, 민통선지역내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영농생활동도 보장해주며, 민통선안의 안보관광예정지역은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함. 이를 위하여 기존 민통선의 일부를 북상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조정하며 보호구역 설정범위의 기준을 현재의 거리개념에서 선 또는 지역개념으로 변경하여 도심지와 주거밀집지역 등에 있는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함(정부 · 민자당).

: 한국 93.9.21.,2면; 한겨레 93.9.21.,2면; 국민 93.9.2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8면) 참조

○ 남북한문제관련 입법의견

- 남북한은 화해 · 협력차원에서 핵문제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여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남북연합은 '95년경까지는 달성되어야 하고 이어 남북연합에서 발전된 '남북연합권력기관'의 형성도 통일과정의 한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제1단계인 화해 · 협력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연합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경제특구에 투자하며 교차승인 등을 통하여 통일의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또한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도록 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키고 군축실시와 함께 통일헌법과 법률을 정비하여야 하며 남북정상

회담과 각료회담을 정례화하여야 함(임동원 전통일원장관·통일정책평가위원).

: 국민 93.9.22.,0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1~73면) 참조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병역문제 처리를 위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수형자, 1년 이상 형선고자 중 2년 이상 집행유예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이 경우 시국관련 수형자외에 연간 8천여명에 이르는 수형기간 2년 미만의 일반사범들도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공익근무요원 복무제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이미 입영한 사람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병역면탈을 위한 고의적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단일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만 징집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번의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도 징집을 면제하여주는 방향으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병역기피를 위한 미귀국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절할 방침임(병무청).

: 한국 93.10.9.,23면; 경향 93.10.9.,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59면)·제8호(70~71면)·제11호(74면) 참조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예비군동원훈련 연기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본인의 결혼과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거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소집일 7~10일전에 본인에게 전달되던 훈련소집통지서를 최소한 14일전에 통보하도록 하며, 훈련실시 60일전에 확정되는 동원훈련계획도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통보하여 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서울 93.9.25.,3면

◎ 內務・地方行政

○ 감사원법 개정의견

- 감사원이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시안은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감사원의 공무원 계좌추적허용조항이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예금계좌비밀조항에 위배된다는 등 감사원의 권한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개정을 보류하기로 함(정부).

: 경향 93.9.17.,1면; 서울 93.10.8.,1면; 국민 93.10.8.,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4면)·제11호(74~76면) 참조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유신이후 각부처를 사실상 통괄·조정하는 수단이 되어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오인되고 타부처에 대한 합법적 간섭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국내정보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공·대정부전복 이외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조직범죄 정보도 수집하여 분석하도록 명문화함.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정치활동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반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2년 이하의 징역)토록 함. 또한 국회법에 의하여 정보위원회가 신설되면 안기부장은 국회의 자료제출이나 발언 및 답변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국회통제의 강화, 정치중립의 제도화,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 등으로 권한의 오·남용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확정함(안기부).
-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은 5·6공 당시 중앙정보부에 주어졌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사범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정보기관의 개혁은 있을 수 없음. 특히 정보조정협의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안

기부가 정보조정권을 전담하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을 것임(박상천 민주당 의원).

- 안기부의 개정안 중 '정치간여 금지', '인신구속 등에 적법절차 준수' 등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현행법 체계상으로도 이미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개선이라고 내세울 것이 못되며,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도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있으나 정보조정업무권이 존치되어 큰 뜻은 없다는 시각이 야권에서 일고 있음. 신설되는 국회정보위가 안기부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기부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국가기밀에 대한 자료제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회통제는 허구일 수 밖에 없을 것임. 또한 안기부의 권한비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권한의 범위문제로서 국·내외의 보안업무 전반을 안기부가 모두 전담하고 수사와 정보조정업무까지 맡겨져 있으므로 정보기관의 비대와 횡포를 막으면서도 남북대치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심의과정에서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동아일보 사설).

: 서울 93.9.16.,2면; 조선 92.9.18.,2면; 동아 93.9.18.,2·4면; 한국 93.9.18.,1면; 한겨레 93.9.18.,3면; 세계 93.9.18.,1·2면; 서울 93.9.18.,1·2면; 국민 93.9.18.,4면; 조선 93.9.19.,4면; 동아 93.9.19.,3면; 한국 93.9.19.,5면; 세계 93.9.19.,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68면)·제9호(87면)·제10호(73면)·제11호(76~77면) 참조

○ 내부고발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조직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정부조직내부의 범죄와 비리를 폭로하는 공무원이 보복성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회와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 특별검사와 능력주의보장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가칭)」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부정방지대책위원회).
- 고발정신이 몸에 밴 서양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동양인들은 내부고발자의 행위가 정의에 합치되더라도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하나의 의견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김창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조선 93.9.22., 4면

○ 여권법 개정의견

- 귀국서약제도와 여권반납명령제도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부과제도를 폐지하고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도 형사사건기소자와 마찬가지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기로 함(국무회의).

: 국민 93.9.16., 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9면) 참조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정부의 역할이 지배자에서 관리자로 바뀐 만큼 공직자들도 이제 기업처럼 경제원리속에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행정의 신속대응태세를 높여 정부의 대민봉사를 일류기업의 고객서비스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임. 이를 위하여 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간소화와 유사·중복된 기능의 체계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국가행정수요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현재 24개 장관급 부처를 18개 내외로 대폭 축소하고 국영기업체도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민영화시키는 안을 만드는 등의 행정개편작업을 추진중임(최창윤 총무처장관).

: 서울 93.9.17., 1·8면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기관의 행정독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규제를 만들 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인 민원옴부즈만제를 도입키로 함. 이를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국무총리산하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5~7명의 민간위원(임기 3년)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국민들이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부당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시정토록 하

는 기능을 하게 하고 사전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임(정부).

: 서울 93.9.17.,8면; 조선 93.9.18.,2면; 경향 93.9.18.,2면; 서울 93.9.18.,2면; 경향 93.9.19.,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8면) 참조

◎ 社會 · 文化 · 教育

○ 고용보험제관련 입법의견

- '95년부터 실시될 고용보험제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행 퇴직금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고용보험제의 실시로 지급될 실업급여수준의 산정기준이 될 기초임금액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경제차관회의, 1993.9.22).

: 서울 93.9.23.,2면; 국민 93.9.23.,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9면) 참조

○ 고용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입법예고중인 「고용정책기본법(가칭)」 제정안중 노동력부족현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업 등 특정업종의 인력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함(경제차관회의, 1993.9.22).

: 서울 93.9.23.,2면; 국민 93.9.23.,17면

○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가칭) 제정의견

- 공공자금이 민간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운용되면서 초래되는 공공부문간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공공목적에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적 성격의 연·기금 및 체신예금 등을 앞으로 신설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가칭)」 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가칭)」은 각종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

성을 해치므로 이 법의 도입을 중단하여야 할 것임(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노동자, 『근로자파견법 및 공공기금관리법 도입반대 노동자결의대회』, 1993.9.23).

: 한국 93.9.2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9~80면) 참조

○ 관변단체육성관련 입법의견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 등 특별법에 의한 단체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구민회관과 같은 시설을 무료로 쓰면서 관제 여론을 조작하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는 바,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관변어용단체지원관련 특별법의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마련을 청원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관변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법률의 즉각적인 폐지는 동시에 자율적이고도 민주적인 모든 민간단체에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 93.9.21., 3면; 한겨레 93.10.6., 9면

○ 교육법 개정안

- 국제화 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감독관청이 학교를 폐쇄처분할 경우 미리 그 대상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함(국무회의).

: 경향 93.9.2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76~78면) · 제10호(82~83면) · 제11호(81면) 참조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전문직 등으로 한정하였던 파견근로자의 적용대상범위를 사실상 전직종으로 확대하고 기업주가 파견근로자 사용에 앞서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파견계약 체결시 근로자측 의견을 첨부토록 의무화함. 이 경우 근로자측이 반대의사를 밝혀도 의견만 들으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로 하였고 파견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하되 1년 이상이 될 경우 기업이 상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함(노동부).

-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은 임금의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고용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임(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노동자, 『근로자파견법 및 공공기금관리법 도입반대 노동자결의대회』, 1993.9.23).

: 국민 93.9.16.,18면; 한겨레 93.9.24.,18면; 조선 93.10.10.,18면; 동아 93.10.10.,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5~76면) · 제8호(78면) · 제10호(85면) · 제11호(81~83면) 참조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노동법 개정작업이 노사당사자의 의견대립을 침체하게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원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제노동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이상, 개정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아 각계각층의 주장을 폭넓게 수용하여야 할 것임(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 93.9.14.,3면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시한부묘지제도의 경우 매장에 익숙한 국민정서와 관습에 맞지 않는데다 15년마다 1천 9백여만기의 분묘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재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묘지면적을 일률적으로 3~6평으로 축소하는 것도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한부묘지제도와 묘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분묘당 3~6평으로 제한한 묘지면적 축소와 15년마다 묘지사용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한부묘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다시 추진키로 함(보사부).

: 한국 93.10.3.,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 참조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개정안에 명문화된 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문화재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갖 특혜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또 문화재사범의 확대적용과 형량의 상향조정이 개정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도굴품인줄 모르고 매장문화재를 매입한 박물관이나 일반애호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2항), 중개상이나 수집상의 허가없는 영업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90조 2항), 발굴이나 집터를 닦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미신고 처분 또는 현상변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제82조 5항)이 불가피하게 되어 고미술계는 수천명의 수집상은 물론 일반애호가까지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어 철폐되어야 함(고미술계).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매장문화재가 대량 멸실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법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특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만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귀중한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보호만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귀중한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파괴·멸실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매장문화재센터(가칭)'의 설립등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건설공사중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신고할 경우 토지소유자나 시공자가 비용을 들여 발굴하여야 하는 부담과 발굴이 끝날 때까지 토지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문화재 파괴를 자초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보상규정의 현실화 등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영남고고학회·호남고고학계 등).

: 경향 93.10.4.,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2면)·제11호(84~85면) 참조

○ 이익집단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체제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우세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다원적 의사결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현재 한국사회는 이익집단을 강제로 정치체제속에 통합하거나 배제하는 국가조합주의체제로부터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태인데 현상황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①이익집단 내부의 의사결정·리더십창출의 어려움, ②이익집단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부재, ③집단이익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정책형성 통로의 결여 등을 들 수 있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①반공익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이익집단관리법(가칭)」의 제정, ②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체제의 개방화, ③이해당사자간의 진술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국회내 공청회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음(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YMCA주최 『민주주의와 집단이익, 집단이기주의·이익사회에 있어 집단이익의 충돌과 공익의 실현』 심포지엄, '집단이익의 조정과 공익의 실현·민주적 접근 전략의 모색', 1993.9. 24).

: 한국 93.9.25.,23면; 서울 93.9.28.,17면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재 잡지계는 광고수주량 축소와 불건전광고 게재, 자본의 영세성,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과열경쟁, 전문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독립된 잡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또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미풍양속저해 등 잡지언론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음부즈맨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이광재 경희대 신문대학원장, 잡지협회주최 제13회 잡지세미나, 1993.9.9~11).
- 주간지를 잡지의 범주에 넣지 않고 신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언론통제를 위한 행정상의 편의에서 비롯된 발상이었으므로 현행 기간별 분류법 대신 형태별 분류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정진석 외국어대 교수, 잡지협회주최 제13회 잡지세미나 '한국잡지언론의 위상과 역할', 1993.

9.9~11).

: 조선 93.9.11.,17면; 경향 93.9.15.,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2~63면) 참조

○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건전한 종교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합리적인 종교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종교단체나 성직자들의 부당한 세제상 특혜와 특권층화에 대한 방지책으로, 일선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에 사단적·재단적 성격을 함께 보유하는 혼합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종교법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박종웅 민자당의원).

: 국민 93.10.7.,21면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의결권한을 강화하고 각 시·도교육청소속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전국 15개 시·도교육감협의회, 1993.9.15).

: 국민 93.9.18.,19면; 서울 93.9.18.,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6~87면) 참조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의견

- 학교주변의 노래연습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내(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금지 및 규제대상업소에 노래연습장·무도학원 및 무도장의 개설,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국무회의).

: 경향 93.9.16.,22면; 국민 93.9.16.,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98면) 참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중학생 이하는 과외교습소에서 과외를 금하는 대신 중학생은 모든 과목에 대하여, 국민학생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및 과목에 한하여, 유치원

생은 예·체능에 한하여 학원수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함(교육부).

: 조선 93.10.3.,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3~84면)·제11호(86면) 참조

◎ 産業・經濟

○ 공산품형식승인제관련 입법의견

- 불량품에 의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산품형식승인제도가 과도한 규제 일변도로 오히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공산품형식승인제도의 대상품목과 규제를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려는 당초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꼭 필요한 품목만 형식승인대상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이에 따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안전심사, 식품위생법상 식품 및 기구검사, 공중위생상 위생용품과 장난감 검사 등을 새로 추가하여 개선대상분야를 현재 10개부처 소관 20개 법률에 의한 23개 제도에서 11개부처 소관 23개 법률에 따른 26개 제도로 늘리기로 함(경제기획원·상공부).

: 세계 93.9.12.,6면

○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종래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내국인과 달리 간이시험을 거쳐 국내공인회계사 자격을 쉽게 취득하게 하고 합작법인 등의 회계업무만 취급토록 업무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업무범위제한도 해제하는 등 공인회계사에 대한 내·외국인의 자격요건을 통일함(국무회의).

: 국민 93.9.16.,19면

○ 금융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할수록 무자료거래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이 세원노출의 기피로 현금을 선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는 지나친 경제위축 등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실명화를 위한

유인책이 보완되어야 하며 특례금융상품(국공채 등)의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함. 또한 실명전환과 관련한 자금출처의 조사는 과거를 묻기 보다는 이 기회에 사전상속, 증여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음을 홍보하여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세율의 추가인하 등 과감한 조세정책의 유인 없이는 실명거래의 정착이 어려울 것임(구분호 한양대 교수, 민자당주최 정책토론회 ‘실명제에 따른 국민의식 어떻게 변하는가’, 주제발표, 1993.9.17).

-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는 세율을 1백% 노출시키도록 요구하되 세율은 과거 5년간의 평균세부담증가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과거 탈루분을 추징할 경우 조세저항이 엄청날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탈세의 ‘조세사면’이 불가피함. 종합과세 등 장기적 조세정책도 가능한 빨리 수립되어야 할 것임(최광 외국어대 교수, 민자당주최 정책토론회 ‘실명제에 따른 국민의식 어떻게 변하는가’ 토론, 1993.9.17).
- 지하경제가 적정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개설하고 부동산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부의 소유 방식과 상속에 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정당한 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달라져야 하며 무자료거래관행이나 영수증 없는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지도와 계몽이 불가피함(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민자당주최 정책토론회 ‘실명제에 따른 국민의식 어떻게 변하는가’ 토론, 1993.9.17).
- 정치·사회·경제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이 실명제에 지워져 동시에 추진될 때 마찰과 부작용은 크며 실명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과거에 대한 응징의 불안감과 조세부담의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돈은 더욱 지하로 숨어버리려 할 것이므로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모든 국민을 탈법자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임(구석모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민자당주최 정책토론회 ‘실명제에 따른 국민의식 어떻게 변하는가’ 토론, 1993.9.17).
- ①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인출자료를 세무자료에 활용하지 않고, ②종전에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람이 실명제 때문에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져도 이를 근거

로 과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세특례규모(연매출 3천 6백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③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시효기간(5년)내의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또한 ④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료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 금액기준을 사람별로 2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⑤임직원이나 제3자명의로 관리해오던 사실상 법인소유의 비실명자금을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⑥개인인 비실명예금주가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면 증여세만 부과하고 종전의 사업관련 세무조사를 일체 배제하며, ⑦장기저리채권의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하고 1종은 실명전환 계좌당 30억원 미만으로 이자율은 연 1%로 하고, 2종은 30억원 이상으로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발행단위는 5천만원, 만기는 10년, 상환방법은 만기시 원리금 일식지급식 복리채로 하되 청약기간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금납부는 11월 15일까지로 함(정부, 금융실명제후속조치).

- 기명식 장기산업채권을 구입할 경우 최초매입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번 정부조치는 행정편의에 치우친 점이 크며, 실명제보완입법을 통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와는 달리 장기산업채권 최초구입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채권이 사전상속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실명제의 근본치지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음(최명근 서울시립대학교수).

: 경향 93.9.17.,4면; 국민 93.9.22.,3면; 한겨레 93.9.25.,6면; 경향 93.9.25.,7면; 세계 93.9.26.,7면; 서울 93.9.28.,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면)·제10호(93~94면)·제11호(87~88면) 참조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현재 각종 기금이 1백 11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기금의 신설시 개별근거법외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한편, 국채의 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에 대한 국회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정부·민자당).

: 국민 93.10..8.,6면; 서울 93.10.9.,3면

○ 담배사업법시행령

- 담배수입판매자와 도·소매업자 등이 휴·폐업할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담배인삼공사만 담배의 수출입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일반업자도 담배를 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국무회의).

: 세계 93.10.8.,2면; 서울 93.10.8.,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1면) 참조

○ 도소매업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국내 유통시장에서 무자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는데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이러한 무자료거래가 크게 축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함. 구체적으로는 점포개설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건축관계 법령에 일임하여 현행 점포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소소매업·도매업을 보호·지원하며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한편 「대규모소매점포의영업활동조정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대규모 소매업과 중소소매업체간의 분쟁, 대규모소매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분쟁(판촉사원 파견요구), 대규모소매업체간의 상호분쟁(휴무일 및 개점시간조정) 등에 관한 조정권한을 강화하기로 함과 아울러 「중소소매업진흥법(가칭)」과 「도매업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또한 제조업이 지배하고 있는 유통구조를 전문유통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양판점과 할인점 등 전문유통업체에 대하여 자금과 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상공자원부).

: 국민 93.9.25.,2면; 동아 93.9.26.,7면; 한국 93.9.26.,7면; 한겨레 93.

9.26.,7면; 세계 93.9.26.,6면; 세계 93.9.26.,7면

○ 상속세법 개정의견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기초과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 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액에 20%를 가산하여 과세토록 하며 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 또는 사후관리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상속재산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액상속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토록 함(국무회의, 1993.9.23).
- 현재의 모든 조세체계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사이의 증여·상속세 폐지의 전면 수용은 어려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사람이 관련세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조세체계를 앞으로는 받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조세체계를 재조정할 방침임(홍재형 재무부장관).

: 서울 93.9.24.,2면; 서울 93.9.24.,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64면)·제6호(83~84면)·제8호(93~94면)·제11호(88~89면) 참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 오는 11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의 주유소거리제한이 전면 폐지되나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거리제한은 시·읍은 5백m, 기타 지역은 1km의 현행 거리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석유수입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저장시설의 규모는 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6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완화하고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시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상공자원부).

: 국민 93.9.17.,7면; 국민 93.9.20.,7면; 조선 93.9.21.,10면; 동아 93.9.21.,10면; 한겨레 93.9.21.,2면; 경향 93.9.21.,6면; 세계 93.9.21.,6면; 서울 93.9.21.,9면; 경향 93.9.26.,23면

○ 소득세법 개정의견

-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원이 노출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하여 보험료 등의 개인적 부담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등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를 영세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기타소득분리과세 한도액이 물가상승 등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타소득분리과세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임(민자당).

: 경향 93.10..4.,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제6호(84면)·제8호(94면)·제11호(88~89면) 참조

○ 신용카드업법 개정의견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용회원에게 전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결제수단의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신용카드업자가 현재의 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한도액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및 카드사용즉시 예금계좌에서 사용액이 결제되는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업법」을 개정하기로 함(국무회의).

: 세계 93.10.8.,2면; 서울 93..10.8.,2면

○ 예산회계법 개정의견

- 일반회계 세제잉여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원리금과 신설되는 국제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대상을 확대함(정부·민자당).

: 국민 93.10..8.,6면; 서울 93.10.9.,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1면) 참조

○ 유통산업구조개편관련 입법의견

-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무자료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으므로 국내유통산업의 구조개편작업을 앞당겨 추진키로 하고 이

를 위하여 「도·소매진흥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중임. 전문유통업 발전·촉진을 위하여 시범도매센터 지정시 세제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제조업이 대리점보다 양판점 등 전문유통업체에 제품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여, 유통산업이 제조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의 도식적인 적용이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 제소에 앞서 상공자원부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유통관계공정거래 심사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상공자원부).

: 한겨레 93.9.14.,7면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실명제 실시 후에는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한다하더라도 그 거래 내용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앞으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증권종사업자의 규범준수의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정도를 보아가며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제200조의 폐지를 추진할 방침임(증권감독원).

: 한국 93.10.8.,1면; 한겨레 93.10.8.,6면; 경향 93.10.8.,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2~103면) 참조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대도시 교통난 완화의 일환으로 ①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초과 대수마다 취득세 4%(현행 2%), 등록세 10%(현행 5%)로 각각 1백% 인상, ②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매매할 경우 인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체납세 승계제도의 폐지, ③자동차세 일시부과 범위도 10만원 이하(현행 4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시납부자에게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④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⑤자동차세 부과기준일을 현재의 매월 15일에서 1일로 변경, ⑥자동차 등록 또는 정기검사시 자동차세 납세필증 또는 납부영수증 제시 의무화, ⑦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 및 검사 불가능, ⑧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장기체납할 경우 60개월 동안 매달 1.2%의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중도금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하고 내무부를 통해 연말까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갑당 가격이 2백원 이상인 국산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갑당 3백 60원에서 4백 40원으로 1백원씩 인상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임(경제기획원·재무부).

: 한겨레 93.9.18.,2면; 세계 93.9.18.,2면; 서울 93.9.18.,4면; 조선 93.9.21.,2면; 한국 93.9.29.,2면; 경향 93.9.29.,22면

○ 지적소유권관련 입법의견

-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일·일본 등과 같이 영업비밀이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적으로 보호되는 체제가 바람직함. 회사와 종업원간의 비밀유지계약, 비밀취득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반환배상, 반환명령, 사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임(김문환 국민대 교수,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주최 『산업스파이에 대응한 기업비밀보호방안에 관한 세미나』 ‘기업비밀에 관한 외국법과 판례’, 1993.9.15).

-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처벌이 제도화되었으나, 기업비밀의 정보적 가치는 일단 침해되면 사후회복이 어려우며 법률적 보호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법률에 의한 사후보호보다 기업의 철저한 사전보안이 더욱 필요할 것임(정태연 변리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주최 『산업스파이에 대응한 기업비밀보호방안에 관한 세미나』 ‘기업비밀에 관한 우리 법의 태도와 전망’, 1993.9.15).

- 기업비밀보호의 방법은 특허출원과 영업비밀 중 기술의 성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임. 영업비밀의 침해사례는 기술정보의 비밀성과 기업들의 법적 분쟁 기피성 등으로 극히 일부만 노출되고 발생은 대부분 내부자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빚어지므로, 방어대책으로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 퇴직자의 경업금지계약체결 등의 장치가 필요함(양영준 변호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주최 『산업스파이에 대응한 기업비밀보호방안에 관

한 세미나』 ‘기업비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어책’, 1993.9.15).

- 우리나라의 기업비밀보호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기업비밀의 누설방지라는 차원에서 인식되고 발전되어 왔으므로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조차 미비하고 보호책도 사전보안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상, 법적 보호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전예방적인 보호는 물론 침해에 따른 사후구제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오용운 변호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주최 『산업스파이에 대응한 기업비밀보호방안에 관한 세미나』 ‘기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경험과 대책’, 1993.9.15).

: 서울 93.9.17., 9면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개정의견

- 금융업무를 전문적이지 못한 우체국으로 확대하므로써 비효율적인 경영을 초래하고 국가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이고, 농어민과 도시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민간주도형 경제가 정착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체신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어느 곳에나 있는 농·수·축협·신협,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의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임(김점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장).
- 이번 법률개정과 관련한 반대입장은 체신금융은 비전문적·비효율적인데다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농어촌에서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다른 민간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준의무가 없는 체신금융은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금융정책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등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그러나 체신부는 90여년간 금융업무를 취급해 오면서 전문성이 없어 문제가 된 적은 없고 우편사업과 함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자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탁과 국공채인수 등 공공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도 체신금융은 모든 면에서 제약이 많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력에서 앞설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릇된 점임, 오히려 시중은행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진출을 기피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단일금

용기관의 독점폐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진정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체국금융업무는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손용기 체신부 금융기획과장).

: 서울 93.9.12.,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0면) 참조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에 맞추어 전기세탁기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10%(현행 20%)로, VTR과 그 관련제품은 20%(현행 25%)로 각각 낮추고, 휘발유는 1백 50%(현행 1백%)로, 경유는 20%(현행 10%)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비과세대상이었던 등유와 천연가스에 대하여 10%의 특수세를 부과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국무회의, 1993.9.23).

: 서울 93.9.24., 2면

◎ 農林·水産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간척사업이나 임대공단 조성 등 보상관련사업은 42건에 1조 9천 5백억원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보상주체·절차·보상기준 등의 미비로 사업의 진척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간척사업이나 임대공단의 조성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시점을 사업시행허가 고시일 등 어민이 최초로 사업시행을 알 수 있는 시점으로 하고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하는 등 어업보상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여 간척사업이나 공단조성사업을 촉진하며, 보상액 평가는 감정평가기관이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서울 93.9.25., 9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실제로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만을 옮겨 농지를 위장매입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법적인 제재가 미흡함. 농지매매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동아 93.9.12.,7면; 한국 93.9.12.,7면; 세계 93.9.12.,7면; 서울 93.9.12.,2면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농업생산법인이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고 해산할 경우 소유농지를 농민에게 팔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함. 그러나 법인소속농민이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 할 때에는 20ha까지 소유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농업생산법인의 사원 1인의 소유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15ha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한겨레 93.9.23.,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3면)·제10호(94면)·제11호(91~93면)
참조

○ 양곡관계법 개정의견

- 6조원에 달하는 양곡관리기금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양곡증권의 신규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양곡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홍수출하방지를 위하여 벼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융자제를 도입하여 미곡유통업자에 대한 시설자금의 용자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곡매매업과 양곡가공업에 허가제에서 각각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함. 또한 양곡관리기금을 통하여 양곡의 수매와 방출을 해오던 것을 정부예산의 특별회계로 수매·방출하도록 하며 농협이 맡고 있는 추곡수매에 대하여는 일단 정부수매가와 동일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한 뒤 산지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차액지급제를 신설하는 대신 「양곡관리기금법」을 폐지하기로 함. 이와 함께 농민들의 계획영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단위로 양곡수매계획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을 개정하여 매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양곡수매계획을 확정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매년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량 등 양곡수급계획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하여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매년 국회에서 되풀이 되는 논쟁의 소지를 줄이고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영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임(정부·민자당).

: 서울 93.9.25.,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8면)·제8호(102면) 참조

◎ 建 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50억원 이상 규모의 모든 공공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진들이 공사의 전과정을 감리·감독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공사발주기관의 감독관과 설계감리자가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들간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불분명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한계로 잦은 마찰을 빚어온 '시공감리제도'는 폐지할 예정임. 감리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권한은 물론 기성금 신청을 위한 공정의 측정 및 준공검사권한까지 부여하여 감리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회사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및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여 권한 못지않게 그에 따른 책임도 대폭 강화함. 이 밖에도 부실시공시 해당 감리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와 함께 공사와 관련한 독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며 총공사비가 50억 미만인 터널·다리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도 '부분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임(건설부).

: 세계 93.10.3.,7면

○ 건설업법 개정안

- 소규모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 건설업면허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2백평 이하 주택이나 1백 50평 이하 건축물이던 것을 앞으로는 25.7평을 이하의 소형건축물로 좁히고, 25.7평을 초과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소규모건축공사면허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며, 3천만원 이하인 소형공사에 한하여 건설업면허 없이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요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85㎡(25.7평)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법」 개정안을 확정함. 한편 특수건설면허제의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건설업신규면허 발급을 매년 실시하고 한번 발급받는 면허의 갱신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으로 편입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특수건설업의 특성상 특수한 장비나 시설의 보유가 필수적인데 반하여 이를 전문건설업으로 편입할 경우 중소건설업체가 이 같은 장비의 보유나 임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문제 등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법시행령 개정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임(건설부).

: 조선 93.9.23.,10면; 한국 93.9.23.,8면; 세계 93.9.23.,7면; 국민 93.9.24.,7면; 조선 93.9.26.,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4~105면) · 제9호(103~104면) 참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난 '87년에 제정된 기준 공장면적률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확장이나 시설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을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공장부지의 상당부분을 업무용으로 구제하기로 함. 현행 공장건축면적 3천㎡ 미만과 3천㎡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업종별 기준 면적률을 단일 기준률로 통일하되, 모직무직조업은 공장규모에 따라 30%(현행 40~50%), 가죽제품제조업은 35%(현행 40~50%), 신문용지제조업은 10%(현행 10~15%), 산업용로봇제조업은 40%(현행 50%), 항공기 제조업은 10%(현행 30%), 폐플라스틱처리업은 10%(현행 40~50%)로 완화하기로 함. 반면 기성양복제조업은 50%(현행 40~50%), 전구제조업은 35%(30~35%), 금속위생용품제조업은 40%(현행 30%)로 지금과 동일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임(상공자원부).

: 서울 93.9.27.,9면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5개용도지역 중 하나인 준농림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설치나 대지면적이 3만㎡(약 9천평)를 넘는 폐수배출공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발행위를 허용하며 이 지역에서 부지 3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물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민원인이 관할 시·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밟아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면 이들 폐수배출시설물의 건축을 허용할 방침임. 이와 함께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관광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등 4개지구로 세분·지정하여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높일 계획임. 현행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합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나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 등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 시설물건축을 허용기로 함과 아울러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개발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도시계획법」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개별법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지금까지는 막연히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오던 것을 토지거래량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고 개발사업실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한해 지정할 방침임. 현행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합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면적 9천평 미만의 건물, 하루 폐수배출량 5백~1천t 미만의 건설을 허용기로 하였는데 허용업종은 의약제조, 화학비료제조, 식료품제조, 석제품제조, 운수, 장비수선, 세탁, 인쇄출판, 정수, 이화학실험, 폐가스 세척시설, 가축제도 등의 사업 등임(건설부).

: 세계 93.9.16.,7면; 조선 93.9.21.,10면; 동아 93.9.21.,11면; 한겨레 93.9.21.,2면; 경향 93.9.21.,7면; 서울 93.9.2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7~108면)·제10호(94~95면) 참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

택에 대하여 현재 연면적 30평에서 최고 60평까지 증·개축을 허용하고 층·중축규모도 90평에서 3백평으로 확대하며 은행, 예·체능계 학원, 병원 등 주민편익시설과 시·군청, 경찰서, 공공도서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차장, 간이주차장 등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안의 도로변에 주유소 및 간이휴게소 설치를 허용하며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은 지역여건에 따라 현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현지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가 현행 '연면적 35평 이하'에서 '2층 60평 이하'로 확대하고, 집단취락지역에서 취락정비사업을 벌일 경우 가구당 40평 이내 면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주택을 증·개축하려고 해도 대지면적이 좁아 건축면적 30평에 미달할 경우 인접토지를 대지로 편입시켜 30평까지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그러나 외지인이 그린벨트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현행대로 증·개축범위를 30평 이하로 계속 제한하며 그린벨트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지난 주민에게는 40평까지만 증·개축을 허용하여 원주민과는 차등을 두었으며, 주택·공장 등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지금까지는 의원·일용품판매점·약국 등 25가지로 한정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농·축협 등의 금융업소, 대서소, 설계사무소, 학원(피아노·미술·컴퓨터·기술계), 병원 등으로 전용을 허용하기로 함. 이와 함께 현재 단위부락 전체 가구숫자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식당운영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하며, 나대지·잡종지 등에 세차장, 간이주차장, 농기계수리소, 테니스장, 배구장 등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지방도변에는 간이휴게소와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건설부).

: 국민 93.9.27.,1면; 조선 93.9.28.,2면; 동아 93.9.28.,1·3면; 한국 93.9.28.,3면; 세계 93.9.28.,1·3면; 서울 93.9.28.,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1~52면)·제8호(111~112면) 참조

○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

-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

여 지역내 기존주택 및 생산물관리용 가건물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식품, 잡화, 의류, 약국 등 일용품 소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시공원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업용 취수시설·관개용수로·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시설 등에 한하여 부대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이와 함께 시설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조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한하여 농업 또는 임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수목의 벌채, 기존 건축물의 개축수선, 기존 주택일부를 일용품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이재민 수용을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함(건설부).

: 동아 93.9.17.,11면; 한국 93.9.17.,8면; 세계 93.9.17.,7면; 국민 93.9.17.,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4면)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전 산업 중 산재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 번의 사고로 3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1~6개월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개월~1년까지 입찰을 제한토록 함. 이와 함께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낮을 때에는 이같은 제재기간을 50%까지 줄이고 평균재해율보다 높을 때에는 제재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함(노동부).

: 경향 93.9.17.,22면; 세계 93.9.17.,21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개발위주로 시행하던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민간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을 개발하는 민간건설업체가 분양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정 10% 이상이면 공장용지를 입주업체에 선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분양가도 현재보다 5~7% 가량 낮추도록 하고 공단개발사업자의 이윤폭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며 선분양대금을 선납한 입주예정업체는 그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가격 정산시 차감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건설부).

: 동아 93.9.11., 11면; 한겨레 93.9.11., 7면; 서울 93.9.11., 9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과밀부담금제도의 실시는 서울시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 자치 분권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서울시에 신·증축되는 5천㎡ 이상의 업무·판매용 건축물로 축소하고, 과밀부담금의 서울시와 지방개발의 사용비율을 당초 50대 50에서 70대 30정도로 조정하여 서울시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건설부의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여야 할 것임(서울시·서울시의회).

- 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건축비의 10%(평균 25만원 수준)로 하고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서울과 지방에 50씩으로 하며 부담금징수권자를 부과대상지역 관할 시·도지사로 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부담금과 대상건물의 규모에 대하여는 시행령 개정 때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자는 건설부의 입장과 현재 규제수준대로 판매시설의 경우 연건축면적 1만 5천㎡(4천 5백여평) 이상, 업무시설의 경우 2만 5천㎡(7천5백여평) 이상으로 확정하자는 서울시의 의견이 맞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론하기로 하였음(민자당·건설부·서울시 당정협의).

: 세계 93.9.11., 7면; 세계 93.9.22.,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4~96면)·제10호(96면)·제11호(93~94면) 참조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양시 양도세감면 종합한도(3억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며,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각각 50% 및 1백% 감면하고,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신속·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법명칭도 「임대주택법(가칭)」으로 바꾸기로 함(정부·민자당 당정회의, 1993.9.25).

: 조선 93.9.26.,2면; 동아 93.9.26.,7면; 한국 93.9.26.,2면; 한겨레 93.9.26.,1면; 세계 93.9.26.,2면; 서울 93.9.26.,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9~110면) 참조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 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사업계획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동주택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계·시공하도록 하며, 특히 공동주택건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막도록 함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실시공을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정부·민자당).

: 서울 93.9.24.,2면; 국민 93.9.25.,2면; 조선 93.9.26.,2면; 동아 93.9.26.,7면; 한겨레 93.9.26.,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5면)·제6호(90면) 참조

○ 토지초과이득세제관련 입법의견

- 이미 토초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6만 여명에 이의신청자 21만 9천 8백 44건 중 68.8%인 15만 1천 2백 37건까지 합하면 최종 토초세 납부자는 24만명의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국세청의 전망이 있는 바, 시행령의 개정과 공시지가 재조사로 농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8월의 시행령 개정 자체가 중증소유임야나 논, 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예외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특정집단의 민원을 들어주었다고 인상이 강하고,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간이나 편법으로 연장해 준 것이나 3년전의 지가까지 소급하여 고쳐주기로 한 것도 정부 스스로 원칙을 상실한 것이어서 이번 공시지가 재조사가 힘있는 자들의 민원에 밀려 편법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한겨레신문).

: 한겨레 93.9.22.,2면; 동아 93.9.23.,1면

◎ 科學技術 · 交通 · 通信

○ 交通시설건설촉진및민자유치법(가칭) 제정의견

-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본회수에 이르기까지는 10~20년 정도가 걸릴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과 요금의 경직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교통부문에 대한 민자의 유치를 위하여서는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우리나라는 민자유치방법·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 민간투자자들에게 역세권·택지 및 관광지 개발권 등을 인정하여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금융·세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 확립 등이 시급함(이계익 교통부장관, '교통부문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1993.9.14).

: 서울 93.9.15.,3면

○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교통시설관련 회계를 '도로 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민자당·정부당정회의).

: 국민 93.9.25.,2면; 조선 93.9.26.,2면

○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경제활성화의 주요관건이 되고 있는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하에 건설부가 입법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촉진법(가칭)」과 교통부가 입법추진중인 「교통시설건설촉진및민자유치법(가칭)」 등 관계부처들이 마련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입법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①사회간접자본 이용요금의 자율화, ②간접자본 투자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③사업참여 절차의 간소화, ④참여업체에 대한 주변 지역개발우선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특별

조치법(가칭)」을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교통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할 것을 검토중임(정부).

: 경향 93.10.3.,2면; 세계 93.10.3.,2면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 통상마찰을 줄이는 한편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에 있어 선진기법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 중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하여는 국내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함(공보처).

: 경향 93.9.17.,2면; 한국 93.9.26.,10면; 조선 93.9.27.,3면; 한겨레 93.10.5.,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4면) 참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재수단이 약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고 체벌·벌금형도 함께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또한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의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유출시키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국무회의).

: 한국 93.9.29.,2면; 경향 93.9.29.,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6면)·제6호(94~95면) 참조

◎ 環境・保健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관련 입법의견

- 지난 7월 가입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이 11월 7일 발효되는 것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개

정하여 지금까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양서류·파충류·곤충류·식물류·어류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내외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조수보호법」, 「약사법」 등 관련법 및 동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함(환경처).

: 세계 93.9.21., 21면

○ 약사법 개정의견

- 약사의 한약취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약사의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조제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한약조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약국휴·폐업에 대한 당국의 지도명령권을 신설하였으며,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보사부).
-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모두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재확정함. 대학에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약사면허를 부여하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약사는 법시행(내년 7월)후 2년 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여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대생들도 보사부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내에 역시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하여야 조제가 가능토록 함. 법시행 당시 1년 이상 한약을 취급한 약사는 향후 2년동안만 조제가 가능하며 계속 한약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도록 함. 또한 한약사나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 및 약대생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한방의약분업 실시전까지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조제 지침에 따라 50~1백종의 처방에 한해 임의조제할 수 있도록 함.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법시행 2년뒤부터 양방의약분업실시를 명시하여 약사가 전문의 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구조, 전염병 예방접종의 경우는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치과의사도 약국이 없

는 지역, 재해구호, 응급환자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및 주사제, 전염병 예방
 접종약의 투여의 경우에는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한
 방은 분업원칙만 밝히고 실시시기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한방분업에
 대비하여 첩약의료보험이 가능한 일부처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실시기로
 하고, 의료보험대상처방의 선정과 보험약가 책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
 이며, 품목별 품질·규격기준과 포장의 규격화 및 표시기준을 설정하고 한
 약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할 것이고 내년중 국립한의학연구소를 설립할 방침
 임(보사부).

- 8일 발표된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①의약분업에 입원환자·응급환자·
 주사제 등 불명확한 예외조항을 두어 이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②한약사제
 도를 만들어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고착시키고 있어 의료정책의 실종
 과 방향상실을 의미하는 것임(대한약사회).

: 세계 93.9.11.,23면; 동아 93.9.14.,30면; 한국 93.9.14.,29·30면; 한
 겨레 93.9.14.,18면; 경향 93.9.14.,23면; 국민 93.9.14.,17·19면; 조
 선 93.9.15.,30면; 동아 93.9.15.,3면; 한겨레 93.9.15.,16·18면; 경향
 93.9.15.,22면; 서울 93.9.15.,2면; 한겨레 93.9.16.,18면; 경향 93.9.
 16.,23면; 서울 93.9.16.,3면; 동아 93.9.18.,31면; 한겨레 93.9.18.,
 15면; 동아 93.9.19.,22면; 서울 93.9.19.,15면; 국민 93.9.21.,3면; 서
 울 93.9.22.,23면; 조선 93.9.23.,30면; 한국 93.9.23.,30면; 조선 93.
 9.24.,31면; 동아 93.9.24.,31면; 한국 93.9.24.,3·29면; 한겨레 93.
 9.24.,3면; 동아 93.9.25.,30면; 한국 93.9.25.,2·23면; 한겨레 93.9.
 25.,14면; 조선 93.9.26.,19일; 한국 93.9.26.,19면; 한겨레 93.9.26.,
 4·14면; 서울 93.9.26.,15면; 한국 93.9.27.,23면; 한국 93.9.28.,
 5면; 세계 93.9.28.,23면; 한겨레 93.10.3.,14면; 서울 93.10.3.,
 17면; 한국 93.10.7.,23면; 한국 93.10.8.,31면; 국민 93.10.8.,1면; 조
 선 93.10.9.,1·3면; 동아 93.10.9.,31면; 한국 93.10.9.,1·3면; 한겨
 레 93.10.9.,1·15면; 경향 93.10.9.,1·3면; 세계 93.10.9.,2·23면;
 서울 93.10.9.,1·22면; 국민 93.10.9.,3면; 한국 93.10.10.,19면; 한
 겨레 93.10.10.,2면; 경향 93.10.10.,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8면)·제8호(117~118면)·제9호(108~

109면) · 제10호(98~99면) · 제11호(99~100면) 참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안

- 곰이나 꿩 등 야생조수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학대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곰의 쓸개즙을 불법채취하거나 석궁 등으로 꿩 등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국무회의, 1993.9.27).

: 경향 93.9.29.,2면; 세계 93.9.29.,2면

○ 지하수법(가칭) 제정안

-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와 환경처가 전국의 지하수부존량과 지하수수질오염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조사한 뒤 건설부는 이를 토대로 지하수이용실태 및 이용계획·보존계획 등 종합적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지반이나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굴착한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 지하수 개발로 생물종의 고사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이와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폐쇄·철거명령 등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시행전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0일안에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한편, 지하수 수량이나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및 지반침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지하수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정부).

: 서울 93.10.4.,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18~119면)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의견

-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논란을 빚어오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기준을 아황산가스의 24시간 평균치를 현행 0.15ppm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인 0.14ppm으로 낮추고,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1시간평균 단기오염치를 신설하여 캐나다의 0.34ppm보다 낮은 수준인 0.25ppm 수준에서 관리하며, 연평균 아황산가스 기준치도 미국과 동일한 0.03ppm으로 정함. 또한 2차오염물질로 광화학스모그를 일으켜 단시간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오존에 대하여는 연간환경기준을 없애는 대신 8시간 환경기준치를 새로 규정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 이내인 0.06ppm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산화질소도 24시간 기준을 신설하여 평균기준치를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0.08ppm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 새로운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여 늦어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환경처).

: 조선 93.9.21., 2면; 한겨레 93.9.21., 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19면) 참조

◎ 法院・法務

○ 거창양민학살사건피해자및유가족의명예회복을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현 시점에서 거창사건 유가족들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은 힘들지만 위령탑건립, 묘역재단장 등의 명예회복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안내용에 사건진상에 대한 성격규정과 일부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포함시킬 예정임(민자당).

: 세계 93.10.8., 2면; 서울 93.10.8., 3면; 국민 93.10.8., 2면

○ 낙태관계법 개정의견

- 형법개정안 제135조(낙태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절차규정없이 살인행위인 낙태를 산모와 시술의사의 결정과 합의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낙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낙태반대운동연합).

: 국민 93.9.17..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6~57면) 참조

○ 사법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민주사법의 길을 위하여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여 현재의 판사임관제도를 최소한 수년간의 변호사나 검사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능상 법관의 판단을 보조함에 불과한 검찰을 법관과 동일한 차원에 두어 사실상 행정이 사법을 주도하는 제도는 철회되어야 할 것임. 법관의 승진·전보제도가 인사의 대원칙을 이루는 이상 사법의 독립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승진단계는 축소되어야 하고 전보제도는 재고되어야 하며 실무법원이 아니라 정책법원이 되어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의 이익과 사상이 대변되도록 비법조인의 임관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안경환 서울대 교수).
- 법관의 관료화와 계급화를 막기 위하여 지법 배석판사에서 대법관까지 8단계에 이르는 법관직급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안팎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새로운 인사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한기찬 변호사).
- 대법원장에게 인사권한이 일임된 현행 제도하에서는 재판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으므로 법관인사위원회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사제도 정착의 틀을 다져야 할 것임(유현석 변호사).
-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하여 ①불법체포와 같은 임의동행제도의 개선, ②수면권을 침해하여 사실상 고문과 다름없는 철야수사의 폐지, ③불공정편파수사를 하는 검사를 수사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제도'의 신설, ④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검찰심사위원회 제도'의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백형구 변호사, 한국법학교수회 주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 심포지엄 '검찰개혁의 방향', 1993.9.17).
- 법관도 국민이 선출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지명하고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한상범 동국대 교수, 한국법학교수

회 주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 심포지엄 '군사통치하의 법률가의 굴종과 영합', 1993.9.17).

-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변협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판사, 검사로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묵인했거나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함(양승규 서울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주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 심포지엄 '변호사제도의 개혁', 1993.9.17).
- 법관의 직급제도는 재판의 본질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며 상명하복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법관인사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의 다층적인 직급의 폐지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임. 사법부의 직급을 폐지함과 동시에 각급법원의 장만을 남겨두고 법원장도 소속법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여야 하며, 법원장이 소속법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여 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독립과 조화될 수 없으며 이는 사법부 수장이 독재에 해당하므로 법관의 인사는 법관인사를 위한 '합의제의결기구'를 설치하여 당사자들은 자신에 관한 인사의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함. 또한 일반행정사건을 담당한다고 하여도 행정과 행정법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판사를 찾기 어렵고 특히 조세·노동분야에서는 이같은 구멍가게식 운영이 더욱 심각하므로, 행정법원·조세법원 등 전문법원에 관련법관을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독립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부의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인력충원대상도 변호사 등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특허법원은 특성상 기술판사와 법률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전문화에 힘써 판사들이 '사건처리하는 해결사'로 전락한 듯한 일반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의 연수만 거치면 법관이 되는 현행 법관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연구관으로 재판보좌를 하거나 법률구조활동 또는 국선대리인 등으로 10년간 활동하게 하여 법관보임이 적당한가를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제대로 실력과 경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재판이 정당성을 갖게 될 것임(정종섭 건국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발표회 『사법부개혁과 공직자윤

리』 주제발표 ‘사법부개혁의 구체적 방향’, 1993.9.18).

- 단일호봉제를 제도화하여 직급제폐지를 보완하고, 최근에 구성된 ‘법관회의’가 자문기구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는데 이를 의결기구로 강화하여야 함. 또한 법원예산을 경제기획원이 장악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예산의 보조가 어렵고 행정부의 압력을 받는 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유지태 고려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발표회 『사법부개혁과 공직자윤리』 토론, 1993.9.18).
- 대입시험이 고교교육을 망친 것처럼 사법시험이 법학대학의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몰고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개선하여 전국 법학대학에서 매년 7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에는 3백명도 안되는 합격자를 선발하는 모순점이 시정되어야 할 것임(최대권 서울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발표회 『사법부개혁과 공직자윤리』 토론, 1993.9.18).
-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폭주하는 상고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이 2인씩 1개 소재판부를 구성하여 모두 4개 재판부를 두고 있는 대법원에 대법원판사 직제를 신설하고 대법관 1인과 대법원판사 2인이 1개 소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소재판부를 12개로 늘려 대법원조직의 2원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신설하여 민사·가정사건 등의 단독사건과 행정사건의 상고심을 전담하도록 하고 이 중 극히 중요한 사건만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4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중임. 또한 사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등을 마련하고 시·군·구에 소액상설심판소를 두어 변호사나 공무원 출신 가운데 덕망있는 인사를 치안순회판사에 임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하며, 민사사건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토록 함과 아울러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내달중으로 법원행정처장 주도로 학계·정계·언론계에 대한 인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 밖에 장기적으로 법조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직 변호사와 검찰 가운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사 중 도덕성과 자질을 기준으로 하여 엄선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임. 또한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법을 서울지법으로 통합·운영하는 방

안과 이 두 지방법원을 교통법원, 국세법원, 노동법원 등 특별법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임(대법원).

: 동아 93.9.16.,5면; 한국 93.9.16.,5면; 한국 93.9.17.,30면; 세계 93.9.20.,9면; 한국 93.9.28.,1면; 국민 93.9.28.,3면; 한겨레 93.10.3.,3면; 한국 93.10.4.,23면; 동아 93.10.5.,30면; 한국 93.10.7.,23면; 세계 93.10.7.,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4~75면) · 제4호(42~43면) · 제6호(103~104면) · 제10호(101면) 참조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검찰이 긴급구속장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체포영장제 시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강제입의동행방식에 대한 여론의 강한 비판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잇단 제동에 대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데, 긴급구속장제도란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상황시 검사의 재량만으로 피의자를 인신구금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입의동행행식에 의한 연행 및 48시간 보호유치와 같은 수사관행은 더 이상 용인받지 못하게 되어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관행을 범의 틀속에 넣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검찰이 긴급구속장을 활용할 경우 사후영장제도가 정착되어 조사기간인 48시간이 재판과정에서 구금일수로 산입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긴급구속장을 발부하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없지 않고, 경찰에 긴급구속장 발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단지 검사가 사후승인하는 제도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검찰의 구인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도 현행 24시간의 보호유치시한을 48시간으로 늘려 오히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한겨레신문 해설).
- 검찰이 이번 긴급구속장의 확대방안을 내놓은 동기는 첫째 강제적인 입의동행방식에 대한 여론의 강한 비판 때문이고, 최근 수사관들의 강제입의동행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고지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한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검찰은 직

접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다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까지 행사할 수 있는 등 세계에 유래가 없는 막강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이 내놓은 자구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옥죄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이종길 국민일보 논설위원).

: 동아 93.10.7.,2면; 국민 93.10.7.,2면

Ⅱ. 최신법령 목록

(1993. 9. 11 ~ 1993. 10. 10)

| 공 포 번 호 | 건 명 | 공포년월일 | |
|---------|---|------------------------------|------------|
| 조 약 | 1191 대한민국정부와인도정부간의관광협력에관한협정 | 1993. 9.20 | |
| | 1192 대한민국과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동기구산항철강위원회가입에관한교환각서 | 1993. 9.21 | |
| 대통령령 | 1193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설립강령 | 1993. 9.28 | |
| | 1194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1993.10. 8 | |
| | 13976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 1993. 9.12 | |
| | 13977 신경제추진위원회규정 | 1993. 9.14 | |
| | 13978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시행령 | 1993. 9.14 | |
| | 13979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9.21 | |
| | 13980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9.23 | |
| | 13981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9.23 | |
| | 13982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9.27 | |
| | 13983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 | 1993. 9.27 | |
| | 1398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 1993. 9.27 | |
| | 1398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 1993.10. 5 | |
| | 13986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10. 5 | |
| | 1398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10. 5 | |
| | 13988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 1993.10. 6 | |
| | 13989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 1993.10. 7 | |
| | 총 리 령 | 432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9.28 |
| | 내무부령 | 593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10. 8 |
| | 법무부령 | 375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10. 7 |
| 국방부령 | 439 국립묘지령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9.11 | |
| | 440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9.28 | |
| 상공자원부령 | 14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993. 9.12 | |
| |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9.20 | |
| |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10. 4 | |
| 건설부령 | 538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9.27 | |
| 교통부령 | 1011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9.28 | |

국내입법의견조사(과학기술혁신과 법제개선)

제 12 호

1993年 11月 10日 印刷

1993年 11月 15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500원

국내입법의견조사 발간목록

| 호 수 | 도 서 명 | 면 수 | 발 행 일 |
|-------|---------------------|------|----------|
| 제 1 호 |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 72면 | 92. 7.29 |
| 제 2 호 |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68면 | 92. 8.31 |
| 제 3 호 | 환경문제 관련 입법의견 | 88면 | 92.10.29 |
| 제 4 호 | 성직자 과세논쟁 | 54면 | 92.11.30 |
| 제 5 호 |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 74면 | 92.12.30 |
| 제 6 호 |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120면 | 93. 3.25 |
| 제 7 호 |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 80면 | 93. 4.30 |
| 제 8 호 |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 130면 | 93. 6.30 |
| 제 9 호 |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 118면 | 93. 8.20 |
| 제10호 | 상품권의 법적 규제 | 112면 | 93. 8.31 |
| 제11호 | 묘지제도의 법적 개선 | 112면 | 93.10.20 |
| 제12호 | 과학기술혁신과 법제 개선 | 116면 | 93.11.15 |
| 제13호 | UR협상추이에 따른 국내입법대비 | 근 간 | |

- 안 내 -

「국내입법의견자료회원」에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현안쟁점에 관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을 수집·정리 및 분석한 「국내입법의견조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연간회비 : 10,600원
- 가입방법 : 은행 온라인 계좌 이용 회비불입
 국민은행 계좌번호 009-25-0002-616
 예 금 주 한국법제연구원
- 연락처 Tel 722-2901~5
 FAX 722-2900